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481-14













국세청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에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3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점차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프랑스에 대한 세무안내책자를 새로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발간된 인도, 말레이시아, 터키, 뉴질랜드에 대한 세무안내 책자에 최근 동향 및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판을 증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न्यार्थिय १०००

Contents

제1장	프랑스 국가 개황	1
	1. 국가 개요	3
	2. 정치 체제 및 주요 조세·경제 동향 ······	4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11
제2장	프랑스 조세제도	. 17
	1.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	- 19
	2. 법인세(Cooperation tax)	. 54
	3. 소득세(Income tax) ·····	. 62
	4. 사회보장세(Social Levies) ·····	. 73
	5.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 74
	6. 상속세(Droit de Succession)	· 81
	7. 증여세(Droit de Donation) ·····	. 83
	8. 부유세(Wealth Tax) ·····	. 84
	9. 출국세(Exit tax) ······	. 86
	10. 세무조사 제도와 납세자 권리보호	. 87
	11. 2013년 개정세법 요약	. 90

제3장	프랑스의 투자환경
	1. 프랑스 투자의 이해95
	2. 현지의 주요 지역 정보105
	3. 프랑스의 투자 형태 및 절차106
제4장	프랑스 진출의 애로사항 및 성공사례115
	1. 프랑스 진출의 애로 및 주의 사항
	2. 프랑스 진출 성공 사례
	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124
제5장	부 록127
	프랑스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법률(프랑스어) 129



- 1. 국가 개요
- 2. 정치 체제 및 주요 조세 · 경제 동향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국가 개요



• 국명 : 프랑스 공화국

• 위치 : 유럽 중서부

• 수도 : 파리(Paris)

• 인구('12년) : 6,535천명

• 종교 : 가톨릭(90%), 기타(10%)

• 언어 : 프랑스어

• 정부형태 : 대통령제

• 국가원수 : 프랑수아 올랑드('12.5

취임)



• 면적 : 549천㎢(한반도의 2.4배)

• 통화단위 : 유로(EUR)

• GDP('12,명목): \$ 2조 7,120억

• 1인당 GDP("): \$ 4만 2,793

• 환율(1€당) : 1,501원('13.6.14)

• 주요산업('12) : 서비스(65%)

• 경제적 강점 : 높은 기술수준,풍부한

관광자원

2

가. 정치 체제

- 프랑스의 정치체제는 순수한 의원내각제도 아니고, 온전한 대통령 중심제도가 아닌 이워 정부제임
- 대통령은 외교·국방·국내정치에 걸치는 방대한 권한을 가지며, 의회의 불신임으로부터 면제받는 초월적 지위를 가짐
- 대통령이 정치적 권한을 보유하며 행정권은 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가 가지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체제임
- 입법부는 하원 우위의 양원제이나 상원도 개헌문제에 관하여는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상원은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대상이 아님
-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최고사법위원회(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의 의장을 겸하고 최고사법위원회가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 임명을 제청하는 체제임
- 프랑스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며, 각료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결정하여 총리와 공동 서명한 대통령 법령으로 임명됨
- 대통령은 임기 5년의 직선제로 선출되며, 중요한 국가정책을 집행하고 국회 해 산권과 비상조치권을 가지며, 한편 의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는 없으며 내 각에 대해서만 불신임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은 내각과 의회에 대해 우월한 지 위를 가짐
- 의회는 직선되는 국회(하원)와 간선되며 지방지차단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구성되며, 내각은 행정권을 갖는데 순수의원내각제와는 달리 내각구성원은 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음
- 내각은 의회해산권도 없으며,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의 총리에 대한 불신임 제도로 인해 다수당이 추천하는 자를 수상으로 임명하게 되어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정당이 다른 동거정부가 성립할 수도 있음



나. 주요 조세·경제동향

1) 주요 조세 동향

- 부자증세로 인한 부자들의 해외 자산도피 문제 논란
 - 사회당 정부 집권 이후 프랑스에서는 부자중세로 인한 유명 인시들이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음
-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 회장이 벨기에 국적을 신청
- 영화배우 크리스티앙 클라비에르가 영국행
-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총리와 설전 끝에 국적포기 선언
 - 이와 같은 프랑스 유명인사의 국적 포기 현상은 2013년부터 연간 100만유로 (우리 돈 약 14억원 이상)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75% 과세표준 구간 신설 예상관련 '부자증세'에 기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75% 과세표준 구간 신설 부분은 최근 위헌 판결¹⁾이 내려졌으나, 정부에서 는 법안 수정을 통해 부자증세 도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방침임
 - 프랑스 과세당국은 2012년 『개정재정법 2011』에서 도입된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²)(sur tax)의 적용 대상과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음 (2011.12. 31~ 2013.12.31에 과세연도 종료되는 회사에 대해 적용)
 - 이 부가세는 총매출액이 2.5억유로를 초과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해당 회사 법 인세에 5%를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임
 - 외국회사의 프랑스지점이 법인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도 이 부가세가 적용되므로 프랑스 현지진출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함
 - 프랑스 및 영국의 과세당국은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연합의 세금체계를 이

¹⁾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2012.12.29)

²⁾ 부가세(Sur tax)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의 줄임말이 아닌 특정 세목에 부가(덧붙여)하여 과 세되는 개념의 세금

용한 조세회피전략을 세워 해당 국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포착하고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알려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사례】

- 대표적 다국적 기업인 『스타벅스』는 유럽총괄본사를 세율이 낮은 네덜란드에 설립한 후 상표로고, 매장 디자인,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영국에서 일어난 매출의 상당 부분을 네덜란드로 이전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음이 드러남
 - 영국 법인세율 : 24%, 네덜란드 지적재산권 관련 법인세율 : 16%
 -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최근 스타벅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 북 등 미국계 글로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탈리아도 구 글이 2.4억 유로 이상 탈세한 혐의를 적발함
- 2013. 2월 프랑스 국무총리와 예산부장관이 주관한 조세포탈(Fraud) 대응책 논 의를 위한 회의³)를 개최하는 등의 동향이 파악됨
 - 회의의 의제는 탈세, 불법영업, 세금서류 위조 등과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본 회의에서 조세포탈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책 중 하나로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감사관4)으로부터 이전가격 처리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임 ➡ 현지진출기업과 한국의 모기업 간의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주의 필요
- 기업을 위한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 for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CICE⁵⁾)' 시행(2013. 2. 13)
 -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 혁신, 교육 및 신시장 발굴

³⁾ 출처 : 프랑스 정부 인터넷 사이트 참조 (www.economie.gouv.fr/lutte-contre-fraude-aux-finances-publiques-2013)

⁴⁾ General Inspectorate of Finance

⁵⁾ crédit d'impôt pour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CICE)



등의 노력을 통해 고용유지,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게 유용할 수 있음

- 이 세액공제로 150만개 기업에 대해 2013년에는 130억 유로, 2014년에는 200 억 유로의 혜택을 누릴 전망임
- 2013. 4. 15 시작된 CICE의 조기환급은 총 세액공제의 85%까지 기업에게 자금지원을 미리 제공하는 것이며, 5월 중순까지 2,670개 기업이 약 4억8천8백만 유로의 혜택을 받음6)
 - 환급된 세액은 기업의 연구, 혁신, 교육, 신시장 발굴 등 용도로만 사용되어야함
- 이와 반면, 특정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동향도 파악되므로 현지진 출 예정 기업은 업종 선택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율 7% ➡ 19.6% 인상 업종(2013.7.1이후 적용)】

- ① 원예업, ② 홈스쿨링(재택학습), ③ 가정 IT 및 인터넷 지원,
 - ④ 주택의 보수 및 관리, ⑤ 중개업
 - 부가가치세율 증가에 의한 세수입은 2013년 6백만유로, 2014년 1천2백만 유로로 전망하고 있음
- 기타의 조세동향으로,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회물차에 대한 환경세(écotaxe) 비 준으로 2013. 10. 1 이후 시행 예정임7)
- 로빈후드세(Robin Hood Tax)의 도입⁸⁾
 - 최근 프랑스 등 다수의 EU회원국들은 주로 부자들이 이용하는 주식·채권·선 물·옵션 등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겨 서민 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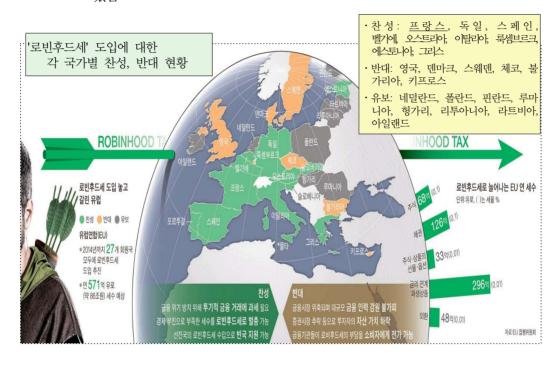
⁶⁾ 출처 : 프랑스 재무부, www.economie.gouv.fr

⁷⁾ 출처 : 프랑스 정부포탈 ; www.gouvernement.fr(운송사업자는 운송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해 환경세를 고객에게 전가)

⁸⁾ 관련 내용 등의 출처 : 2013. 6. 13자 중앙일보

금융거래세'(일명 로빈후드세)를 EU전체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로빈후드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프랑스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8월에 독자적으로 0.2%의 금융거래세를 신설하여 지난해 1억7000만 유로 금융거래세를 거둔 데 이어 올해 3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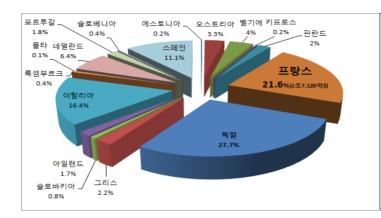


- EU집행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주식·채권 거래금의 0.1%,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금의 0.01%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도입할 경우 27개 회원국이 추가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연간 571억 유로(약 86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2) 주요 경제 동향

○ 프랑스는 유로존 17개국 중 2012년 GDP 기준으로 경제비중 2위(21.6%)이며, 세계 최대 시장인 EU시장의 관문으로서 세계 주요 투자 유입국 중 하나임





(유로존 GDP비중)

✓ 기준 : 2012년

✓ 출처 : IMF

○ 프랑스 정부는 2013. 5월 2012년 재정수입 등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경제지표 현황은 아래표와 같음

2012년 프랑스 재정수입 등 현황

(단위: 십억유로, GDP 대비 %)

	2011	2012	전년대비 증감
재정수입	271.4	282.5	11.1
조세수입	255	268.4	13.4
세외수입	16.4	14.1	-2.3
재정지출	365.3	365.0 ^{t)}	0.3
재정수지	-90.7	-87.1	3.6
(GDP 대비 %)	(-5.3)	(-4.8)	(0.5)
총자산	921.5	949.5	28
공공부채	1749.4	1859.2	109.8

주: 1) 예외적 사건인 유럽안정화메커니즘(ESM) 분담 지급금 65억유로와 덱시아(Dexia)은행으로의 자본지원금 26억유로 제외

자료: 재무부, Projet de loi de règlement du budget et d'approbation des comptes de l'année 2012, 2013.5

○ 프랑스의 GDP 성장률은 지난 해 경기둔화 영향으로 2013년에도 0.1%의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지만, 2013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 등으로 경기 가 점차 회복되어 2014년에는 1.2%, 2015~2017년에는 매년 2.0%의 성장이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됨9)

○ 또한, 재정적자는 2013년 GDP 대비 3.7%, 2014년 GDP 대비 2.9%로 재정적자 목표인 GDP 대비 3% 이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프랑스 정부, Le programme de stabilité de la France 2013-2017(2013.4.17) (2013-2017 안정화 프로그램 발표)

- 부채는 2012~2014년 기간 중 상승세로써 2014년에 GDP 대비 94.3%로 정점에 이르지만, 2015년부터 감소하여 2017년에는 GDP 대비 88.2%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임
- 2014년에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이하로 감축될 전망이며, 프랑스 정부는 2016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재정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는바, 현지진출 예정 기업은 거시적인 검토가 필요함

⁹⁾ 출처 : 프랑스 정부의 '2013-2017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 발표(2013.4.17)

3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프랑스와의 교역 현황 등

- 2012년 프랑스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54.4% 감소한 26억100만 달러, 수입 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49억 2,400만 달러로 23억 2300만 달러의 무역 적자 를 기록함
- 프랑스에 대한 수출입은 2009년 금융위기를 맞아 대폭 감소한 후 꾸준히 확대 되다가 2012년에 선박과 항공기 수출입 대폭 감소로 37.4% 감소함

對 프랑스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 출	3,496	2,911	3,004	5,708	2,601
수 입	4,877	4,006	4,283	6,312	4,924
수 지	-1,381	-1,095	-1,279	-605	-2,323

출처 : 한국무역협회(KITA)

- 프랑스 주력산업인 항공기업, 농업, 관광업, 화학업, 제약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현지진출 예정 기업이 프랑스에서 사업할 업종 선정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는 항공기 부품, 무선전화기, 컴퓨터 및 축전지, 합성수 지, 편직물, 기타 정밀화학원료, 고속도강 초경공구, 전동기, 원동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 현지진출 예정 기업은 프랑스 현지 수요가 많은 품목에 관심을 두고 사업
 계획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對 프랑스 투자진출 현황 및 동향

○ 프랑스에 투자한 우리기업은 총 163개로 최근 유로존의 재정위기에도 불구, 2012년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1,321% 증가함

〈對 프랑스 투자 현황〉

연도	법인 수	송금횟수	투지금액(천\$)	비고
계	163	559	1,306,510	
2012	10	21	148,724	· 전년대비 1,321% 증가 → 재정위 기에 불구, 對프랑스 투자회복 추 정
2011	10	33	11,258	· 총투자의 60.5%가 최근 5년간 이
2010	7	42	337,418	루어짐 → 향후 지속적 투자 예상
2009	11	51	264,025	· 제조업 투자기업 : 63개, 투자금액
2008	18	60	29,555	비율 31.3%로 1위 점유
2007이전	107	352	515,530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정보
 - 프랑스에는 삼성전자, 태평양화학, LG전자 등 20여개 대기업을 비롯 다수의 중소기업이 진출 중이며, 향후 200억 유로(약 28조 8천억원) 규모의 초고속 광통신망 구축 사업 등에 SK텔레콤의 진출이 예상됨(펠르랭 장관이 사업 참여를 요청)



- 한국계 입양아 출신 플뢰르 펠르랭(한국명 : 김종숙) 프랑스 중소기업 혁신 디지털경제장관이 2013. 3월 한국을 방문, "프랑스가 유럽 국가 중 한국의 첫번째 경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 장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국가이며 유럽에서 외국인 투자에 가장 열려 있는 나라"라고 강조함
- 현재 프랑스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주요기업은 아래 내역과 같으며, 현지진출 예정인 기업은 아래 주요기업과 협력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면 도움이 될 것임

프랑스 진출 주요 한국 기업 리스트

(단위: 천 EURO)

연번	회사명	연도	투자 내역	투자금액
1	태평양화확	1990	제조업/향수(로리타)	54,213
2	삼성전자	1988	전자제품,이동통신단말기 판매	34,710
3	삼성물산	1997	섬유,정보기기,경공품종합상사	24,249
4	엘지 전자	1990	가전제품 판매업	6,241
5	기아 자동차	2004	자동차 판매업	5,000
6	(주)홍진 크라운	2001	헬멧(모토사이클,자전거용)	2,683
7	한국 타이어(주)	2003	타이어 판매업	1,066
8	금호타이어	2008	타이어 판매업	630
9	판토스	2005	물류, 운송	
10	제일기획	2003	광고	500
11	LG Electronics	2008	에어컨	
12	E-Woo Technology	2008	의료장비	
13	메디슨	2005	의료기기 판매업	4,600
14	한진해운	1990	해 운운송 업	
15	현대상선	2000	해 운운송 업	305
16	현대중공업	2005	중장비제조·판매업	37
17	LG실트론	2003	반도체부품	
18	현대자동차	2012	자동차 판매 및 공급	
19	대한항공	1975	항공운송서비스	
20	아시아나항공	2008	항공운송서비스	

< 자료 출처 : Kotra 파리 무역관 > • 투자금액 : 공란 → 미확인

다. 한국과의 주요 이슈10)

1) 프랑스 대학가에 부는 한국어 수강 열풍

- 프랑스 주요 도시에 소재하는 대학가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프랑스 대학가에는 매년 100여개의 신생 보이 밴드가 생겨나는데 이들에게 K-Pop 등 영향에 따라 한국이 희망과 동경의 대상이 되어 한국어를 열정적으로 수강한다고 알려져 있음
- 프랑스의 국립동양어 및 문명대학(Inalco)의 경우, 2010년 한국어과 수강생은 50명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300명으로 늘어 수용할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함
- 또한, 파리 7대학 한국어과, 액상프로방스(Aix en Provence) 대학, 리옹, 보르도 대학의 한국어과는 이미 만원이며, 파리 한국 문화원의 한글 강의실도 만원인 상태라고 함

2) 한류의 원조 한국 영화

- 세계 유명 영화제 중 하나인 프랑스의 칸느 영화제에서 여러 차례 수상 이력이 있는 한국 영화가 프랑스 한류의 원조라는 것이 현지 거주 한국인들 사이의 일 반적인 인식임
- 일부 영화 마니아층으로부터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한국 영화는 길거리 대형 광고판에 개봉 포스터가 종종 걸릴 정도로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함

3) 한류 열풍을 대중화시킬 '한식'의 상품화

○ 한국 영화가 마니아층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면 이제는 한식이 프랑스 음식문 화에 새로운 화두로 등장, 급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한

^{10) 2013} KOTRA 자료 일부 참조



소식이라는 현지 반응이 있음

- 몇 년 전만해도 40~50개 수준이었던 한국 식당은 2011년말 기준으로 90개를 넘어서는 등 성장을 기록했음
- 놀라운 점은 한국 식당을 찾는 손님 중 한국인이나 아시아계가 아닌 현지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임
- 중국, 이탈리아, 태국과 함께 4대 요리대국이자 전 세계 관광객이 모여드는 최 대 관광국인 프랑스에서 한식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음식을 전 세 계로 전파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 라 할 수 있음



- 1.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 2. 법인세(Cooperation tax)
- 3. 소득세(Income tax)
- 4. 사회보장세(Social Levies)
- 5.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6. 상속세(Droit de Succession)
- 7. 증여세(Droit de Donation)3
- 8. 부유세(Wealth Tax)
- 9. 출국세(Exit tax)
- 10. 세무조사 제도와 납세자 권리보호
- 11. 2013년 개정세법 요약

1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 이전가격세제란? 》

- 다국적기업은 관계기업간의 제품, 서비스 등 거래시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국가에 진출한 기업의 소득을 늘리고, 높은 세율 국가의 기업에 귀속되는 소득을 줄임으로써 다국적기업 전체로 보아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경우가 많음
-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은 사업소득에 대한 진출국의 과세를 피하면서 사업이윤을 모기 업에 이전시키는 등 기타 다른 기업목적으로도 이전가격방법을 활용하여 왔음
- 각 국은 이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이전가격과세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전가격과 세는 과세관할권이 2개국 이상에 관련되므로 다른 국가와의 조세에 대한 협의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됨
- 즉, 이전가격과세제도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거래상황하에서 어떤 특정 기업과 국외특수관계자간(각 국가의 특수상황에 따라 별도 법령이 있는 경우 동 거래를 포함)의 거래와 동 특정기업과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 금액, 조건 등을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 ①특정기업(A) ⇔ 국외특수관계자(AA)등 , ②특정기업(A) ⇔ 비특수관계자(B)
 ①과 ②거래 비교)
- 따라서, 이전가격과세제도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한다는 성격이외에도 각국의 과세권을 조정하는 특징이 있음

가. 이전가격세제 이해를 위한 프랑스 국제조세의 개요

- 이전가격세제는 국제조세의 한 부분으로 국제조세의 기본내용 이해 필요
- 프랑스의 국제조세제도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와 연관되어 있음

- 각 주체별 과세원칙의 적용
 - 프랑스에서는 개인 거주자인 경우는 '속인주의'가, 비거주자 및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속지주의'가 적용됨
- 프랑스 국제조세의 법원성
 - ① 헌법: 국제조세의 가장 중요한 법원성
 - ② 조세조약 : 우리나라와는 1979년에 체결, 1981년부터 효력 발생
 - ③ 조세일반법¹¹⁾(Code Général des Impôts) : 프랑스 국제조세의 가장 많은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 프랑스에 배분될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안부규정』, 『이전가격세제』, 『조세피난처세제』가 있음
 - ④ 조세절차법¹²⁾(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이전가격 적용 등 국제조세 과세와 관련, 실무적인 법 집행에 대한 절차를 규정
 - 법원성 없는 훈령, 지침, 판례 등도 실무상 중요한 해석 기준 또는 판단 기준을 제공
- 외국법인에 대한 프랑스의 과세 입장
 - 프랑스에 존재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은 '속지주의'가 적용되며, 프랑 스 내국법인의 과세방법도 동일
 - 즉, 1)프랑스 내국법인이 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에서 수행하는 경우와 2)외국기업이 그 기업 전부 또는 일부를 프랑스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과세함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관련 사항
 -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은 어떤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 위되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함
 - 고정사업장은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그 중요성이 있음. 즉, 프랑스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프랑스에 고정사업장을

^{11) &#}x27;프랑스 조세일반법' 약어 : 불어 → **CGI,** 영어→ **FTC** (French Tax Code)

^{12) &#}x27;프랑스 조세절차법' 약어 : 영어 ➡ FPTC (French Procedural Tax Code)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임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정되어 프랑스에서 과세됨

프랑스의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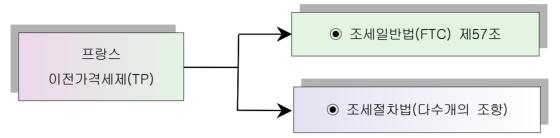
- ① 일반적 의미의 고정사업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유형의 장소) ✔기업의 본사, 공장, 사무소 ✔지점, 상점, 대리점 ✔광산, 천연자원 채굴장소 등
- ② 종속대리인(어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특정기업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그 기업을 위해 권한을 프랑스 안에서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 ③ 중요한 사업 활동이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경우(중요한 상업적 행위, 결정과정 등)
 - 지속적인 거래가 아닌 한 두건의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종합적인 상업결정과정에 포 합시키지 아니함
 - 프랑스의 조세회피 대응 법률
 - ① 이전가격세제 : 조세일반법(FTC) 제57조 등에 규정
 - ② 조세회피지역에 지급한 경비에 대한 대책: FTC 제238 A조
 - ③ 조세회피지역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관련 법률: FTC 제209 B조
 - ④ 납세의무자의 권리남용 규제 법률 : 조세절차법(FPTC) 제L64조

나. 프랑스 이전가격세제의 과세당국과 법령체계

1) 과세당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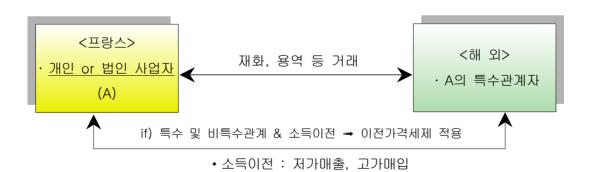
- 이전가격세세제 등 프랑스 조세 전반을 담당하는 과세당국을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약칭 DGFiP)라고 하며, 편의상 『공공재정일반충국』이라 표현 가능
- DGFiP는 2008년 4월 종전의 Direction Générale des Impôts(조세일반총국)과 Direction Générale de la Comptabilité Publique(공공회계국)이 통합된 기관이며,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담당

2) 이전가격세제 법령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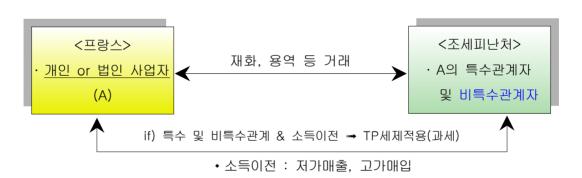


(1) 프랑스 조세일반법(FTC 57)

- 프랑스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실체적 규정은 조세일반법(FTC)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절차는 별도 규정)
- FTC 제57조는 우리나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는 달리 다음 두 가지의 거래 관계에 대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 ① 프랑스 기업(개인 및 법인) ⇔ 해외 특수관계자
- ② 프랑스 기업(개인 및 법인) ⇔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uncooperative havens) 소재 기업 ②번은 우리나라 국조법에 없는 특이한 규정
- 위 ①의 경우는 프랑스의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특수관계기업과 의 거래시 자국(프랑스)의 소득을 간접적(indirectement)으로 이전하는 하는 것 을 방지하는 규정(종속,지배관계자간 거래 조항)



- ① 근거 : 조세일반법 제57조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Article 57] 제1항 Pour l'établissement de l'impôt sur le revenu dû par les entreprises qui sont sous <u>la dépendance</u> ou qui possèdent <u>le contrôle</u> d'entreprises situées hors de France, <u>les bénéfices indirectement transférés</u> à ces dernières, soit par voie de majoration ou de diminution des prix d'achat ou de vente, soit par tout autre moyen, sont incorporés aux résultats accusés par les comptabilités. Il est procédé de même à l'égard des entreprises qui sont sous la dépendance d'une entreprise ou d'un groupe possédant également le contrôle d'entreprises situées hors de France
- 소득의 간접 이전 → 직접(물리적) 이전이 아닌 거래형식이나 계약 등을 통한 소득 이전을 의미
- 위 ②의 경우는 프랑스의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 (uncooperative havens)¹³⁾ 소재 기업과의 거래시 자국(프랑스)의 소득을 간접적 (indirectement)으로 이전하는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임(조세피난처 거래 관련 조항)



^{13) •} 전통적인 조세피난처 : Jersey, Guernesy, Liechtenstein, 네덜란드령 Antilles, Bermudes

^{• &#}x27;정상적인 세제를 갖춘' 조세피난처 : 아일랜드, 스위스, 벨기에, 말트, 사이프러스, Maderère, 네 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 출처 :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안창남

- ② 근거 : 조세일반법 제57조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Article 57] 제2항 La condition de dépendance ou de contrôle n'est pas exigée lorsque le transfert s'effectue avec des entreprises établies dans un Etat étranger ou dans un territoire situé hors de France dont le régime fiscal est privilégié au se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238 A. (종속,지배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전가격세제 적용)
- 조세피난처 관련 사항은 조세일반법 제238A조에 별도 규정
 - 유럽의 경우 확실한 국경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며, 프랑스 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주변 여러 지역에 조세피난처가 존재하고 있어 프랑스 기업 중 가격조작 등을 통해 소득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에 대비한 규정임
 - 국경개념이 확실한 우리나라 경우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만 이전가격세 제를 적용하므로 우리 국조법에는 없는 조항으로 프랑스로 진출하거나 진출 할 우리기업이 특히 유의하여야함
 - 또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외국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므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당국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도 주의할 사항임
- 조세일반법 제57조 제3항에서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하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과세당국은 조세절차법 L 57조 및 L 61조에 따라 경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전가격 자료 요구 및 제출 관 련 조항)
- 근거 : 조세일반법 제57조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Article 57] 제3항 En cas de <u>défaut de réponse à la demande faite en application de l'article</u> L. 13 B du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ou en cas d'absence de production ou de production partielle de la documentation mentionnée au III de l'article L. 13 AA et à l'article L. 13 AB du même livre, les bases d'imposition concernées par la demande sont évaluées par l'administration à partir des éléments dont elle dispose et en suivant la procédure contradictoire définie aux <u>articles L. 57 à L. 61</u> du même livre

- 현지진출한 우리기업은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 과세당국의 자료제 출 요구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야 불이익이 뒤따르지 아니하므로 주의 필요
- 조세일반법 제57조 제4항에서는 위 1~3항의 선행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전가격 혐의로 경정 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거래한 유사 기업의 소득과 비교 하여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전가격으로 인 한 과세소득 결정 관련 조항)
- 근거 : 조세일반법 제57조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Article 57] 제4항 A défaut d'éléments précis pour opérer les rectifications prévues aux premier,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u>les produits imposables sont déterminés par comparaison avec ceux des entreprises similaires exploitées normalement.</u>
 - 위와 같이 조세일반법 제57조는 프랑스 이전가격세제의 근간을 이루는 법령으로서 현지 진출하는 우리기업은 동 조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2) 프랑스 조세절차법(FPTC)

- 위에서는 프랑스 이전가격세제 중 조세일반법 규정인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57 조 및 제238A조(French Tax Code Articles 57 and 238A)에 대해 살펴 보았음
- 다음에서는 이전가격세제의 조세일반법 규정 집행을 위한 실무적이고 절차적인 법령인 프랑스 조세절차법(FPTC)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세부내용은 제목을 달리하여 비교적 상세히 알아보고자함
- 프랑스 조세절차법 중 이전가격세제 관련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주로 적용되는 절차법은 Articles L 10, L 13AA, L 13AB, L 13B, L 80B, L 188A 등임
 - 일반적 이전가격 서류 요구를 위한 규정 ➡ L 13AA(2009.12.22 채택)
 - 프랑스 조세일반법 238-0-A에 정의된 "비협조적 조세피난처(uncooperative

havens)"와의 거래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를 위한 규정 ➡ L 13AB (2009.12.22 채택)

- 세무조사 절차 중 이전가격 관련 정보 요구 규정 ➡ L 13B 등
- APA 관련 규정 ➡ L 80 B 7°
- 조사기한의 제한 확장 등 관련 규정 ➡ L 188A
- 조세절차법 L 13AA 및 L 13AB조에 따라 신규 요청 자료로 제공되는 것에 대한 적용과 관련된 지침 행정지침 → 4 A.10.10 N° 1호(2011. 1. 4) [L13AA 및 L13AB 조항에 대한 공식적 해석(행정해석)]

《참고》과세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s) : 조세일반법 제212조와 39.1 조(Articles 212 and 39.1 of the FTC)에 규정

다. 이전가격세제 적용 대상

- 프랑스 이전가격 적용 대상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 (enterprises)활동으로 규정한 바, 개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됨
- 법령상 기업(enterprises)활동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지 않으며, 판례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폭넓게 해석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기업을 법적 실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Profit-orientated activity, 이익 지향성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판단
 -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예: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기 업의 지점)은 프랑스 내의 내국법인은 아니지만 이익 지향성 활동을 하므로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임
 - 또한, 속지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에 있는 프랑스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프랑스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프랑스 조세일반법(FTC) 제57조의 이전가격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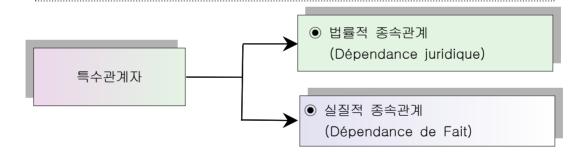
《TP 적용대상》

- ① 프랑스 내의 본점(A) ⇔ 그 본점(A)의 해외 국내사업장과의 거래
- ② 프랑스 내의 국내사업장(B) ⇔ 그 국내사업장(B)의 해외 본점과의 거래
- ③ 프랑스 내의 국내사업장 ⇔ 프랑스 외에 위치한 국내사업장, 기업, 기업활동과의 거래

라. 특수관계자(Related Parties) 범위 규정

〈 특수관계자 개요 〉

- 프랑스의 특수관계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법률적 종속관계(Dépendance juridique)와 실질적 종 속관계(Dépendance de Fait)로 구별
- 이전가격세제 적용을 위해 프랑스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함(단, 조세피난처와의 거래는 제외)



1) 법률적 종속관계(Dépendance juridique, Legal dependence)

- ① 두 법인 중 일방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통제
- ② 두 법인이 동일한 자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 ③ 법 규정상 '통제'는 직·간접적인 지분, 의결권의 지배적인 확보, 제3자를 통한 의사결정권을 포함하는 개념

- 법률적 종속관계는 일방이 타방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우월적 지위가 보 장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
- 외국기업이 제3자(예: 대리인)를 통해서 프랑스 기업 내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적 의미의 종속관계에 해당
- 제3자의 범위에는 회장, 관리자, 이사, 가족(가족회사의 경우), 제3자와 종속관계에 있 는 회사 등이 포함
 - ④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인 경우에는 종속관계(dependence)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자회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르며, 단순히 지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 ⑤ 프랑스 판례는 독립성 판단시 재무상, 사업활동상 독립적이라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의존성이 있거나 자본의 대부분이 의존적인 경우에 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2) 실질적 종속관계(Dépendance de Fait, de facto dependence)

- 프랑스 세법상 실질적 종속관계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에 따른다는 원칙만 규정 하였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없음
- 즉, 거래 계약서 등의 내용에서 거래 일방이 상대방을 '종속'시킬 정도의 규정이 있다면 쌍방은 종속관계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최종적 해석은 사법부에 결정 권한이 있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 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와 관련된 프랑스의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음

〈『실질적 종속관계』관련 판례 〉

-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구매가나 판매가를 결정하거나 다른 회사의 상표권에 대해 상 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여야 함
- 한 회사가 다른 회사가 제공한 중개서비스에 대해 이익이 많이 났다는 이유로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에 대해 설명이 필요
- 동일한 법인명을 사용, 동일한 대표부를 공유, 동일한 생산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실 질적 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등이 있음
- 거래상대방이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경우, 종속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므로 과세당국은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없음

마. OECD 가이드라인의 취급

- 프랑스의 이전가격세제는 OECD 가이드라인(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을 준수함
- 프랑스 이전가격규정에는 사업 구조조정(business restructuring) 또는 고정사업 장(permanent establishment) 이익 공헌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음

바.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규정

1)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종류 및 근거

○ 프랑스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종류 및 근거는 다음과 같음

- 근거 : 공공재정일반총국의 재정, 공공조세에 관한 공식적 고시(2012.9.12)
 Bulletin Officiel des Finances Publiques-Impôts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 B. Détermination d'un prix conforme au principe de pleine concurrence (정상가격에 부합하는 가격 결정)
 - 1. Les méthodes de fixation des prix de transfert(이전가격의 결정 방법)
 - a. Les méthodes traditionnelles (전통적 방법)
 - 1° <u>La méthode du prix comparable sur le marché libre ou méthode</u> directe

(독립된 시장 또는 직접적 방법에 의한 비교가능방법➡ 비교가능 제3자가격방법)

- 2° La méthode du prix de revente(재판매가격법)
- 3° La méthode du prix de revient majoré (원가가산법)
- b. Les méthodes transactionnelles (거래방법)
- 1° La méthode du partage des bénéfices (이익공유방법 ⇒ 이익분할법)
- 2° La méthode transactionnelle de la marge nette(거래순이익률법)
- 2. Les particularités des services intragroupes et des mises à disposition d'actifs incorporels (그룹 내 서비스의 특수성과 무형 자산 사용)
- 이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조세일반법(FT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즉, 과세당국인 공공재정일반총국(DGFiP;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의 내부 지침 『Bulletin Officiel des Finances Publiques-Impôts』(재정 공공조세에 관한 공식적 고시)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최근 근거 규정: 2012년 9월 공표(公表)]
 - 편의상 Bulletin Officiel des Finances Publiques-Impôts를 이하 "BOFPI"라고 함
- 이 방법들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하는 방법과 같으며, 우리나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법의 종류와 같음



2) 정상가격 산출방법(Les méthodes de fixation des prix de transfert)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¹⁴⁾(CUP)

우리나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국조법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프랑스 이전가격지침 (BOFPI)	1° La methode du prix comparable sur le marche libre ou methode directe (공개시장 또는 직접적인 방법에 의한 비교 가격의 방법) 150 La methode du prix comparable sur le marche libre est la plus simple des methodes. Elle consiste a comparer le prix de transfert applique entre les entreprises liees, au prix du bien ou du service pratique entre un acheteur et un vendeur independ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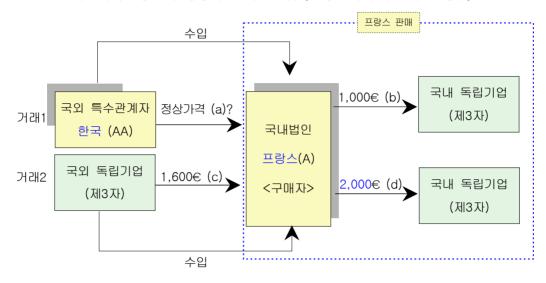
- BOFPI에서 이 방법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거래하는 기업에게 적합하며, 복잡한 제품 또는 무형자산(노하우, 특허 등) 관련 거래에는 적합하지 아니하 며, 내부 및 외부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음
- ② 재판매가격방법¹⁵⁾(RPM)

우리나라 국조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 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 는 방법
프랑스 이전가격지침 (BOFPI)	2° La methode du prix de revente (재판매 가격 방법) 160 L'objectif de cette methode est de connaitre le prix auquel un produit achete a une entreprise liee est revendu a un client independant (le prix de revente), pour ensuite y soustraire une marge brute (la marge sur prix de revente) permettant a la societe de distribution liee de couvrir ses frais de ventes et ses autres charges d'exploitation, et de se voir attribuer un benefice tenant compte des fonctions realisees et des risques assumes. • 구체적 계산방법에 관한 지침상 설명은 생략하며, 계산 개념은 아래 그림 참조

¹⁴⁾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CUP)

¹⁵⁾ Resale Price Minus Profit Method(RPM)

▶ 재판매가격방법의 정상가격 계산 개념(프랑스에서 수입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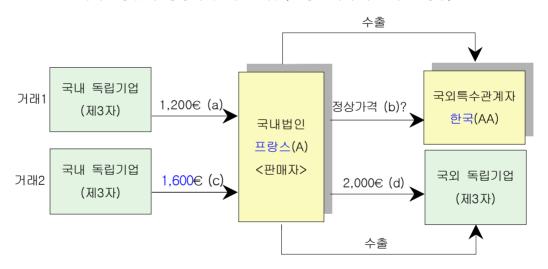
- 거래 1과 거래2가 유사한 거래상황이라면 국내법인(A)와 국외특수관계자(AA) 간의 정상가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AA가 한국 모법인, A가 프랑스 현지법인(자회사 등) 으로 당사자 설정 가능>
 - 1) 거래2번(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2,000-1,600)÷2,000= 20%
 - 2) 통상의 이윤 계산 : 재판매가격(b) ×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 1,000 × 20% = 200
 - 3) 정상가격(a)의 계산 : 재판매가격(b) 통상의 이윤 = 1,000-200 = 800€
 - 프랑스 과세당국은 A가 AA로부터 800€ 초과 구매시 이전가격 혐의 있다고 볼 것임



③ 원가가산방법¹⁶⁾(RPM)

우리나라 국조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 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프랑스 이전가격지침 (BOFPI)	3° La methode du prix de revient ¹⁷⁾ majore ¹⁸⁾ (원가가산법) 170 Cette methode consiste a determiner le cout de revient du bien ou du service vendu ou fourni a une entreprise liee, et a y ajouter une marge beneficiaire de pleine concurrence, obtenue en utilisant un comparable interne ou externe a l'entreprise. Le prix obtenu est considere comme le prix de pleine concurrence qui doit etre pratique pour la transaction entre les deux entreprises liees. • 구체적 계산방법에 관한 지침상 설명은 생략하며, 계산 개념은 아래 그림 참조	

▶ 원가가산방법의 정상가격 계산 개념(프랑스에서 수출하는 경우)



- 거래 1과 거래2가 유사한 거래상황이라면 국내법인(A)와 국외특수관계자 (AA)간의 정상가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AA가 한국 모법인, A가 프랑스 현지법인

¹⁶⁾ Cost Plus Method (CPM)

¹⁷⁾ revient[Rəvjɛ̃] : prix de revient 원가

¹⁸⁾ majorer[maʒəre] 가격·세금·급여 따위를) 인상하다,(금액을) 가산[증액]하다

(자회사 등)으로 당사자 설정 가능>

- 1) 거래2번(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원가기준 통상이익률: (2,000-1,600)÷1,600= 25%
- 2) 통상의 이윤 계산 : 정상가격원가(a) × 원가기준 통상이익률 = 1,200×25%= 300
- 3) 정상가격(b)의 계산 : 정상가격원가(a)+통상의 이윤 = 1,200+300 = 1,250€
- 프랑스 과세당국은 A가 AA에게 1,250€ 미만 판매시 이전가격 혐의 있다 고 볼 것임

④ 이익분할방법¹⁹⁾(PSM)

우리나라 국조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 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 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으로 보는 방법
프랑스 이전가격지침 (BOFPI)	1° La methode du partage des benefices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 190 Cette methode est particulierement adaptee lorsque les projets ou les activites au sein du groupe sont tellement communs et imbriques qu'il n'est pas possible de determiner et/ou de justifier une valorisation pour chaque operation (ex : construction et assemblage par plusieurs entreprises liees d'un meme produit, vendu ensuite a un client independant). Le recours a cette methode est egalement possible lorsque les methodes traditionnelles ne peuvent pas etre utilisees en l'absence de comparables independants pertinents, ou lorsque les deux entreprises liees mettent en oeuvre des actifs incorporels significatifs qui rendent difficile l'application des methodes traditionnelles decrites ci-av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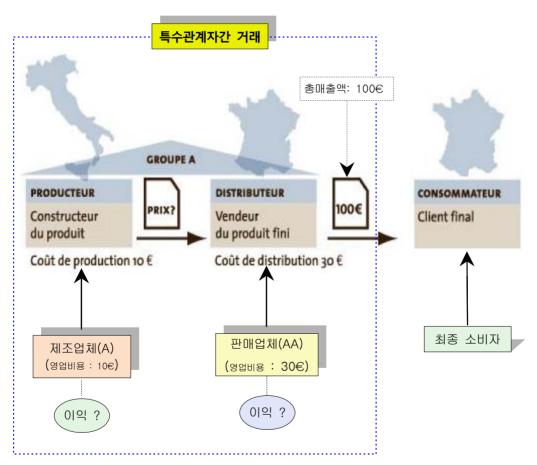
▶ 이익분할방법은 특수관계기업의 거래에서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이익(결합이익)에서 시작되는 개념으로, 어떤 거래에 있어 독립기업들이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익분할을 구함으로써 특수관계거래에서 설정되거나

¹⁹⁾ Profit Split Method(PSM)



부여되는 조건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자 하는 방법임

- ➤ 즉, 이익분할방법은 먼저 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로부터 그 기업들간에 분할 되어져야 하는 결합이익을 확정하고 그 이익은 독립기업원칙하의 계약에서 이익을 분할하는 타당한 경제적 방법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에 분할됨
- ➤ 프랑스 이전가격지침(BOFIP)상의 이익분할방법에 대한 계산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으므로 프랑스 진출 기업이 동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 참고하면 유용할 것임



• 사례 근거: BOI-ANNX-000140-20120912(이전가격지침 부록: Exemple de calcul avec partage des benefices)

- ◈ 위 사례에서 각 업체별의 분할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
- (1) 결합이익 [= 최총매출액 (A의 영업비용+ B의 영업비용)]
 - 100€ (10€ + 30€) = 60€ [합리적 배분기준을 관련제품의 영업 비용으로 단순 가정]
- (2) 배분기준(charges d'exploitation ; 영업 비용) 및 배분율 계산
 - 영업비용에 대한 생산 비중
 - contribution du producteur aux charges d'exploitation : 10 / 40 = 25%
 - 영업비용에 대한 유통(판매) 비중
 - contribution du distributeur aux charges d'exploitation : 30 / 40 = 75%
 - (3) 각 업체별 분할이익 계산 결과

Avec cette cle de repartition, le resultat revenant a chaque entreprise est le suivant :

- 제조업체(A) ➡ producteur : 60€ x 25 % = 15€
- 판매업체(AA) ➡ distributeur : 60€ x 75 % = 45€
- <u>프랑스 판매업체인 AA의 이익이 45€ 에 미달될 경우 이전가격 혐의 있</u> 는 것으로 판단



⑤ 거래순이익률방법²⁰)(TNMM)

우리나라 국조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프랑스 이전가격지침 (BOFPI)	2° La methode transactionnelle de la marge nette (거래 순이익률 방법) 200 Cette methode consiste a determiner a partir de donnees appropriees (exemple : les charges, le chiffre d'affaires, la valeur des actifs…), la marge beneficiaire nette que realise une entreprise dans le cadre d'une transaction intragroupe, et a la comparer a celle qu'une entreprise independante realiserait pour une transaction comparable. Elle suppose de raisonner en ratio de marge nette (par exemple, des ratios de benefice d'exploitation par rapport au chiffre d'affaires, de rendement des actifs, ou d'autres indicateurs de benefice net) et non pas en p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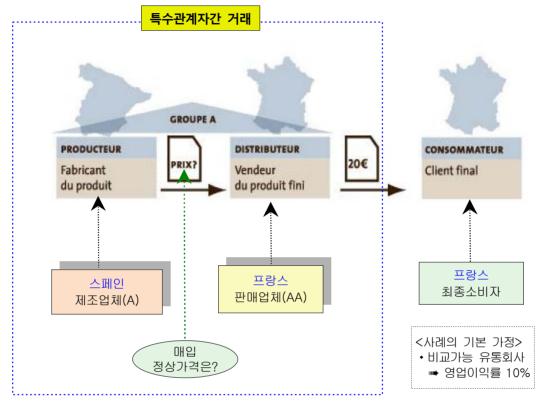
- ▶ 이 방법은 납세자가 특수관계거래에서 실현되는 적정기준(원가, 매출, 자산 등) 대비 순이익률을 검토하는 방법임
- ➤ 즉, 유사한 거래를 하는 비교가능 기업들 사이에는 그러한 거래를 통해 유사한 순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실현된 거래순이익을 파악하여 이를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기업들간에 실현된 거래순 이익과 비교하는 방법임
- ➤ 프랑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관들은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 중 거래순이 익률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The tax authorities accept the CUP, Resale Price Method, Cost Plus Method, Profit Split and TNMM; yet tax inspectors usually prefer the TNMM

<출처 : E&Y, 2012 Transfer pricing global reference guide>

➤ 프랑스 이전가격지침(BOFIP)상 거래순이익률법에 대한 계산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으므로 현지기업 참고시 유용할 것임

²⁰⁾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TNMM)



- 사례 근거: BOI-ANNX-000139-20120912(이전가격지침 부록: Exemple de calcul par rapport a une marge nette)
 - ◈ 위 사례에서 프랑스 판매업체(AA)가 스페인 특수관계자인 제조업체(A)로부터의 매입 정상가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을 설명
 - (1) 프랑스 AA의 제3자에 대한 정상매출가격
 - Prix de vente (prix de pleine concurrence car pratique avec un tiers²¹⁾) : 20€
 - (2) 프랑스 AA의 판매 영업이익(정상거래순이익)
 - 비교가능 분석의 유통마진(영업이익) = 20(매출액)×10%(영업이익률)

²¹⁾ **tiers**[tjɛːR] 1.국외자의,외부인의 2.제삼자의 **3.제삼자**



= € 2

- Marge d'exploitation du distributeur issue de l'analyse de comparabilite: 20 x 10% = 2€
- 기본가정 영업이익률 10% ➡ [매출액 (매출원가+판매비및일반관리 비)]²²⁾ ÷ 매출액
- (3) 프랑스 AA의 판매관련 총 영업비용 계산
- 관련제품의 매입 등 총 영업비용 = 20(총 매출액) 2(정상거래이익) = 18€
- L'attribution au distributeur d'une marge d'exploitation de 2€ suppose que le total de ses charges d'exploitation (y compris²³) le prix d'achat²⁴) des pates de fruit) soit de: 20-2 = 18 € [정상 거래이익률(영업이익률이 판매대리점(AA)에 할당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관련제품 구입액 등을 포함한 총 영업비용은 "총 매출액-이익"으로계산됨]
- (4) 프랑스 AA가 특수관계자인 스페인의 A로부터 매입할 정상가격의 계산
- 프랑스 AA의 매입원가를 제외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8€이라고 가정하면. 관련 제품의 적정 매입원가 10€가 최종 계산됨
- Si le total des charges d'exploitation (hors²⁵⁾ prix d'achat des pates²⁶⁾ de fruit) est de 8 € le prix de transfert devra etre de: 18-8 = 10 € [총 영업비용(관련 판매제품의 매입원가는 제외)이 8인 경우 양도가격은 18-8=10€으로 계산됨]
 - .. 매입 정상가격 = 20(매출액) 2(정상거래순이익) 8(판매비 및 일 반관리비) = 10€
- 따라서, 프랑스 AA가 정상적으로 매입한 경우라면 매입가격은 10€를 초 과하지 말아야함

²²⁾ 거래순이익(기업회계상 영업이익)을 의미

²³⁾ compris[kɔ̃pRi] 1.포함된 2.이해된 3.…와 …의 사이에 놓인

²⁴⁾ achat[a∫a] 1.물건사기, 매입, 구입 2.산 물건, 구매물 3.총액

²⁵⁾ hors[JR] 1.[옛]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2.…의 범위 밖의,…을 넘어선

²⁶⁾ pâte[paːt] 1.밀가루 반죽 2.면류,국수 = pâtes alimentaires 3.치즈(의 성질)

사. 비용분담 약정 관련 규정

- 공헌도에 따른 비용 조정 또는 비용 분담 약정이 인정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OECD 가이드라인 제8장을 준수하고 있음
 -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 CCAs (비용 조정)
 Cost Sharing Agreements → CSAs (비용 분담)
- 조세일반법(CGI, FTC) 제38조 및 제39-1-1에 근거하여, 공헌비용 또는 비용분 담 관련 지급액은 공제가능함
- 공헌비용 또는 비용분담 지급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용조정(CCA) 및 비용분담(CSA)과 관련, 기존의 무형자산(과거에 존재하던 무형자산)의 공헌자에 대한 지급액이 있는 경우 동 지급자의 세무상 취급은 다음과 같음
 - 조세일반법 제39조 1-2에 따라 간주 취득의 경우 당해연도 공제는 불가하며, 동 지급액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상각이 가능함
 - 만약, 동 지급액이 사용료로 간주된다면 당해연도 공제가 가능함

아. 이전가격 요구 자료 규정(Documentation requirements)

1) 일반적 자료 요구(L 13B조 관련)

- 프랑스 과세당국은 조세절차법 L13B조와 L10조에 따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전가격관련 자료(서류)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2010년 1월 조세절차법 L13AA조 및 L13AB조에 따른 절차를 채택함과 동시에 자료(서류) 요구 제도가 정착되었음

• 근거 : 조세절차법 L13B조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icle L13 B]

Lorsque, au cours d'une vérification de comptabilité, l'administration a réuni des éléments faisant présumer qu'une entreprise, autre que celles mentionnées au l de l'article L. 13 AA, a opéré <u>un transfert indirect de bénéfices</u>, au sens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57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elle peut demander à cette entreprise des informations et documents précisant :

➡ 세무 조사 기간 동안, 조세일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이익의 간접 이전 등 이전가 격 혐의가 있을 경우 지정하는 회사의 정보에 대한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이익의 간접 이전 여부가 프랑스 세법상 이전가격 혐의에 대한 검증 대상임. 직접적 이전은 이익의 결과물인 현금 등을 물리적으로 직접 이전(운반)하는 의미로 추정됨)

○ 통상 요구되는 입증서류(자료)는 다음과 같이 예상되므로 현지 진출 기업은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음(참조 원문 조항 : L13B, L13AA 및 L13AB)

《 세무조사시 요구되는 이전가격 관련 자료 》

- 사업과 조직구조의 개관 (Busines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verview)
- 기능분석, 계약서, 법률과 경영 관련 정보(Functional analysis, contracts, legal and management account information)
- 선택된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경제적 분석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따른 비교대상과 비교 가능성을 포함)

(Method selected and economic analysis (including identification of competitors and comparables, depending upon the transfer pricing method)



- 근거 : 조세절차법 L13B조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Article L13 B] 1항~4항 1° La nature des relations entrant dans les prévisions de l'article 57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entre cette entreprise et une ou plusieurs entreprises exploitées hors de France ou sociétés ou groupements établis hors de France ;
 - ➡ 조세일반법 제57조와 관련,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특성 등
- 2° La méthode de détermination des prix des opérations de nature industrielle, commerciale ou financière qu'elle effectue avec des entreprises, sociétés ou groupements visés au 1° et les éléments qui la justifient ainsi que, le cas échéant, les contreparties consenties ;
 - ➡ 특수관계자간 산업, 상업 또는 금융 성격의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등
- 3° Les activités exercées par les entreprises, sociétés ou groupements visés au 1°, liées aux opérations visées au 2°;
 - <u>위 2항에 따라 거래에 관련된 1항에 언급된 회사, 기업 또는 그룹에 의해 수행되는</u> 활동 등
- 4° Le traitement fiscal réservé aux opérations visées au 2° et réalisées par les entreprises qu'elle exploite hors de France ou par les sociétés ou groupements visés au 1° dont elle déti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la majorité du capital ou des droits de vote.
 -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 조세정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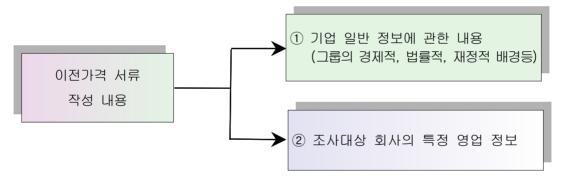
2) 특별한 경우의 자료 요구²⁷⁾(L 13AA 및 L 13AB 관련)

- 프랑스 조세절차법 L13AA에 근거, 회계 연도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은 세무조사시 세무조사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① 세전 매출액 또는 자산이 4억 유로 이상인 경우
- a) Dont le chiffre d'affaires annuel hors taxes ou l'actif brut figurant au bilan est supérieur ou égal à 400 millions d'euros
 - ② 사업연도 종료일에 a)에 언급한 매출 또는 자산을 소유한 법인의 자본 또는 의결권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 b) Détenant à la clôture de l'exercice,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lus de la moitié du capital ou des droits de vote d'une entité juridique personne morale, organisme, fiducie ou institution comparable établie ou constituée en France ou hors de France satisfaisant à l'une des conditions mentionnées au a
 - ③ 사업연도 종료일에 a)에 언급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법인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 또는 의결권을 50% 이상 지배당하는 경우
- c) Dont plus de la moitié du capital ou des droits de vote est détenue, à la clôture de l'exercice,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ar une entité juridique satisfaisant à l'une des conditions mentionnées au a
 - ④ 과세당국에 의한 판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모든 프랑스 회사가 속해 있는 연결회사의 일부로서 혜택을 받는 그룹에 속하는 경우

²⁷⁾ 프랑스 조세절차법 L13AA 및 L13AB에 따라 새로이 규정된 특별한 이전가격 요구 자료(서류)를 뜻함

- d) Bénéficiant de l'agrément prévu à l'article 209 quinquies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et, dans ce cas, toutes les entreprises imposables en France faisant partie du périmètre de consolidation
 - ⑤ 적어도 위 a), b), c), d)에 언급한 조건의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하는 프랑스의 계열(연결) 그룹에 속할 경우
- e) Appartenant à un groupe relevant du régime fiscal prévu à l'article 223 A du même code lorsque ce groupe comprend au moins une personne morale satisfaisant l'une des conditions mentionnées aux a, b, c ou d

3) 이전가격 관련 제출 자료의 작성 내용



- 세무조사시 프랑스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이전가격 서류의 내용은 두가지 측면으로 작성 가능함
- (1) 그룹의 경제적, 법률적, 재정적 배경 등 기업과 관련된 일반적 정보에 관한 내용²⁸)으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음

²⁸⁾ Gener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related enterprises (economic, legal, financial background of the group)

《 기업의 일반 정보 요구 자료 》

- 근거 : 프랑스 조세절차법 L13 AA 제2조 제1항 제1호 ~ 제5호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icle L13 AA, II. 1°
 - ① 과거연도와 비교하여 세무조사 기간 중에 발생한 변경 사항을 포함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 une description générale de l'activité déployée, incluant les changements intervenus au cours de l'exercice vérifié;
 - ② 통제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참여한 기업들의 실체를 포함한 법률 및 운영 구조의 일반적인 설명
 - une description générale des structures juridiques et opérationnelles du groupe d'entreprises associées, comportant une identification des entreprises associées du groupe engagées dans des transactions contrôlées;
 - ③ 세무조사 대상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회사가 부담한 수행 기능 및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une description générale des fonctions exercées et des risques assumés par les entreprises associées dès lors qu'ils affectent l'entreprise vérifiée ;
 - ④ 세무조사 대상 회사와 관련하여 동 회사가 보유한 주요 무형자산의 목록
 - une liste des principaux actifs incorporels détenus, notamment brevets, marques, noms commerciaux et savoir-faire, en relation avec l'entreprise vérifiée;
 - ⑤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일반적 설명
 - une description générale de la politique de prix de transfert du groupe ;

(2) 세무조사 대상 회사에 대한 특정 영업활동에 관한 정보²⁹⁾ 내용으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의 특정 정보 요구 자료》

- 근거 : 프랑스 조세절차법 L13 AA 제2조 제2항 제1호 ~ 제5호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icle L13 AA, II. 2°
 - ① 전년도와 비교하여 세무조사 대상연도에 발생한 변경 사항을 포함한 수행 사업활동 의 일반적인 설명
 - une description de l'activité déployée, incluant les changements intervenus au cours de l'exercice vérifié;
 - ② 로열티를 포함한 금액 및 거래의 실질의 흐름을 포함하여 관련기업들과 수행된 거래에 대한 일반적 설명
 - une description des opérations réalisées avec d'autres entreprises associées, incluant la nature et le montant des flux, y compris les redevances ;
 - ③ 원가 분담 약정 목록 및 이전가격 기준 사본
 - une liste des accords de répartition de coûts ainsi qu'une copie des accords préalables en matière de prix de transfert et des rescrits relatifs à la détermination des prix de transfert, affectant les résultats de l'entreprise vérifiée;
 - ④ 기능분석, 위험 및 자산과 적용된 방법 선택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이전가격 결정에 사용된 방법 제시
 - une présentation de la ou des méthodes de détermination des prix de transfert dans le respect du principe de pleine concurrence, comportant une analyse des fonctions exercées, des actifs utilisés et des risques assumés ainsi qu'une explication concernant la sélection et l'application de la ou des méthodes retenues ;
 - ⑤ (재화 및 용역의 특징, 기능 분석, 계약 조항, 경제적 상황 및 비교대상으로서 사용되어진 회사들의 특정 전략 등을 포함하여) 선택된 방법에 의한 비교가능 요소 분석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설명
 - lorsque la méthode choisie le requiert, une analyse des éléments de comparaison considérés comme pertinents par l'entreprise.

²⁹⁾ Specifc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audited company



4) 비협력 조세피난처와의 거래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

- 프랑스 조세절차법 L 13AB조에 따라 프랑스 일반조세법 238.0A에 정의된 「비 협력(non.cooperative)」 지역(국가)과 거래한 모든 프랑스 기업들은 프랑스 조세 절차법 L 13AA에 규정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보충 제출)하여야함
- 보충 제출할 서류는 법인세 신고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프랑스 과세당국에 의해 통상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보충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임
- 특히 외국 기업에 대하여는 프랑스에서 회계 호환성이 있는(accounting. compliant) 표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함

5) 자료 요구에 관한 기타 사항

○ 프랑스 조세절차법 L 13AA 및 L 13AB³⁰⁾에 명시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프랑스 납세자들은 조건 충족에 불구하고 프랑스조세절차법 L 13B³¹⁾에 명시 된 일반적 이전가격 입증서류와 L 10조에 명시된 일반 정보 공유 규정에 의한 구속을 받음

6) 서류의 준비 및 제출 기한

- 제출서류 준비 기한32)
 - 2013년 사업연도 기준인 경우, 당해 연도의 이전 가격 문서는 (2013년 회계 연도 문서) 세무신고서가 프랑스에 제출되는 때에 초안을 작성해야함
- 서류 제출 기하³³⁾
 - 이전가격 서류는 프랑스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2개월(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1개월(30일간) 연장을 얻는 것이 가능

³⁰⁾ 프랑스 조세절차법 L 13AA 및 L 13AB ➡ 특별하게 새로이 발표(고시)되는 이전가격 요구 서류

³¹⁾ 프랑스 조세절차법 L 13B조 ➡ 일반적 이전가격 필요 서류 규정 조항

³²⁾ Deadline to prepare documentation

³³⁾ Deadline to submit documentation

함(총 제출 기간 : 3개월 초과 못함)

• 근거 : 프랑스 조세절차법 L 13B[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icle L13B] Elles doivent, en outre, préciser à l'entreprise vérifiée le délai de réponse qui lui est ouvert. Ce délai, qui ne peut être inférieur à <u>deux mois³4</u>), peut être prorogé sur demande motivée sans pouvoir excéder au total une durée de <u>trois mois³5</u>).

- 만약 이전가격 서류 제출이 불이행 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과세당국은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공식적 요구 공문을 발송할 것임
- 근거 : 프랑스 조세절차법 L 13B[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Article L13B] Lorsque l'entreprise a répondu de façon insuffisante, l'administration lui adresse une mise en demeure d'avoir à compléter sa réponse dans un délai de <u>trente jours³⁶⁾</u> en précisant les compléments de réponse qu'elle souhaite.
 - 세무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세무조사관의 첫 번째 요구에 따라 즉시(세무조사 시작되는 당일) 제출되어야하며, 미제출 등 불성실 제출의 경우 위와 같은 기 간 규정이 적용됨
 - ➡ 30일간 과세당국의 공식적 요구, 납세자는 30일 한도로 연장 요구 가능
 - 참고로, 이전가격 서류가 프랑스어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은 프랑스어로 번역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34) deux mois : 2개월

35) trois mois. :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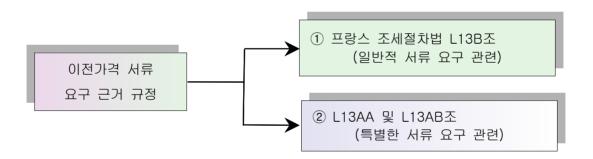
36) trente jours : 30일



자. 이전가격세제 관련 제재 규정37)

1) 요구 서류 제출 불성실 관련 제재

- 이전가격 요구 서류 제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에 따른 불이익은이전가격 경정결정의 결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상 불이익 항목에 부가하여 적용됨
- 영어의 "penalty"에 해당하는 프랑스 세법상 용어는 "sanction" 의 으로 "처벌, 제 재, 징계(처분)"의 뜻이 있음
- 이전가격 관련 요구 서류의 근거 규정 및 요구 내용은 위에서 살펴 보았듯 다음 두 부분으로 요약되며,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



- 즉, 과세당국의 입증서류 요구에 대한 제출 및 답변을 불이행한 경우 다음 조 항에 따라 특정한 이전가격 관련 불이익 항목들이 적용됨
 - 첫째, 프랑스 조세절차법 L 13B조에 따라 적용되며, 동 조항은 일반적 이전 가격 입증서류 요구와 관련되며, 프랑스 과세당국이 이 조항 적용 전에 이전 가격 문제들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음을 규정

³⁷⁾ Transfer pricing penalties

³⁸⁾ 본서에서는 제재사항을 편의상 '가산세'라고 번역, 사용함(단, 경우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의 개념 이 존재할 수 있음)

- 둘째, L 13AA 및 L 13AB조에 따라 적용되며, 동 조항은 2010년신설 조항으로 특별한 이전가격 입증서류 요구 관련 규정임
- 프랑스 조세절차법 L 13B조에 열거된 내용에 따른 완전한 정보 제공을 불이행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가 있음
 - ➤ 과세당국이 보유한 정보에 기초하여 회사 과세소득을 경정결정
 - ➤ 조사대상 매 기간별로 10,000유로의 가산세 부과
- 프랑스 조세절차법 L13AA조 및 L13AB조에 근거, 충분한 이전가격 입증서류 제공을 불이행한 경우 10,000유로부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향후 확정될 잠정 적 이전가격 경정결정금액의 5%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2) 이전가격 경정결정으로 인한 제재

- 이전가격 입증서류 요구에 따르는 것에 불구하고, 이전가격의 경정결정으로 인 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됨
- 이전가격 경정결정 후 추가 이익은 보통 배당으로 간주되므로 통상적으로 원 천징수가 요구됨
- 이중과세 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원천세법은 관련 조세조약 규정에 따르며, 특별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적으로 25%, 국외 사업실체가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50%까지 증가됨
- 이전소득이 간주배당으로 취급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통상적으로 원천징수 무 신고 가산세 10%를 적용함
- 세금의 경정결정의 경우 납부 지연이자는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적용되며, 통상적 납부 지연 이자율은 1월당 0.4%임(즉, 연간 4.8%)
- 만약 납세자가 사전에 신뢰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40%의 추가적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빈번하게 과세당국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 위반을 한 경우 8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상호합의를 통한 구제는 부인됨
- 그 외에, 이전가격 소득조정은 사업관련 세금 및 사용인 이익분배 관련 제도와



같은 여타의 세금과 분담금의 경정결정을 초래할 수 있음

3) 제재의 완화(가산세 등 경감)39)

- 세무조사 기간 동안과 과세당국이 경정결정에 관한 통지를 송보하기 전에, 납세자는 프랑스 조세절차법 L62조의 내용에 따라 일반 납부지연 이자율의 70%에 상당하는 연 3.36%의 납부지연이자(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여 납세자 오류사항이나 불성실 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허용됨
- 이러한 측면에서, 납세자는 보충적인 세무신고서(수정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 에 추가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여야함

차. 이전가격 세무조사 관련 사항

- 일반 세무조사 위험은 높으며, 이전가격 이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중 비교적 자세히 조사 될 것임
- 최근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수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프랑스 과세당국은 더욱 광범위하고 정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전가격만 조사하는 세무조사절차는 없으며 일반조사시 병행 실시
- 심층 정밀 조사를 받는 이전가격 이슈는 다음과 같으므로 현지 진출기업은 각 항목별로 적정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세무조사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는 방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³⁹⁾ Penalty relief

《 이전가격 세무조사 주요 이슈 》

- 사업 구조조정(예: 무형 자산, 고객, 법률적 보상(면책)의 이전) 또는 적용되는 이전가격 정책의 변화를 숨길 것으로 보이는 갑작스런 영업 이익 감소
- 추정가격 이하 또는 초과 가격(under or over estimated prices)으로 제품 매매, 손실이 발생 한 경우(in case of losses) ➡ 고가매입, 저가 판매, 손실 발생
- 주로 계열법인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경영서비스 수수료 (Management fees)
- 대리인 및 중매인(仲買人)의 운영 (예 : 판매대리점 등 배급업자가 대리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 휴폐업 및 전환 비용 (Closure /conversion costs)
- 무형자산 및 경제적 소유권(로열티에 대한 의문사항 포함)
- 비교대상 거래의 검색과 관련하여, 프랑스 과세당국은 검증 상대방이 프랑스 사업자인 경우 프랑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pan. European(범유럽)" 검색을 거부함
 - 이전가격 이슈가 세밀하게 진행되는 프랑스에는 오히려 판결 법원이 많지 않으며, 입증책임과 관련되는 주요 의문점들 중 하나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세무조 사과들에게 달려 있다고 파악됨

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관련 규정

<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의 개념 이해 >

- APA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성립 이전에 일정기간에 걸친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이전가 격 결정을 위해 적정한 기준을 결정하는 합의를 말함
- APA는 'Advanced Pricing Agreement' 'Advanced Pricing Arrangement', 'Advance Pricing Approvals'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 승인'이라는 용어 를 공식 사용하고 있음
- '일방적 합의(Unilateral APA, 과세당국 ⇔ 과세국 소재 납세자)'와 '쌍무적 합의 (Bilateral or Multilateral APA⁴⁰), 다수의 과세당국간 합의)'가 있음



- 프랑스 조세절차법 L 80B 7°에 따라 쌍방, 일방, 다자간 APA가 가능함
- 근거 : 프랑스 조세절차법 L 80B[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Article L80 B] 제 7항

7° Lorsque l'administration a conclu un_accord⁴¹) préalable⁴²) portant sur la méthode de détermination des prix mentionnés au 2° de l'article L. 13 B, soit avec l'autorité compétente désignée par une convention fiscale bilatérale⁴³) destinée à éliminer les doubles impositions, soit <u>avec le contribuable⁴⁴</u>); ➡ 조세절차법 L 13B조에 언급된 정 상가격결정방법에 대해 각 방법에 의한 사전 합의가 가능함

- APA관련 수수료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은 2004년 금융 개정법에 의해 규정되었고 2005.1.1 발효되었음
- 2006. 11. 28 과세당국은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APA 절차를 덧붙인 "#4 A.13.06"이라는 새로운 행정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전가격 방법 등에 대해 온라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음
- APA관련 사전 승인 신청은 신청 대상 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시작 6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기간은 향후 3~5년임
- 프랑스에서는 APA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관련 전문 행정력 부족과 신청 건수의 증가로 승인을 얻기까지 과정은 보통 18개월 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현지진출기업 중 AP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신청 자료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 치밀한 내용 검토 등의 대응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⁴⁰⁾ Bilateral(양자간) or Multilateral(다자간) APA

⁴¹⁾ accord[akɔːR] 협정, 합의

⁴²⁾ préalable[pRealabl] 먼저의, 사전의

⁴³⁾ bilatéral[bilateRal] 양측의

⁴⁴⁾ contribuable[kɔ̃tRibuabl] 납세자

타. 이전가격 조정 및 세금부과에 대한 제한 규정

- 이전가격 소득조정에 대한 제한 법령은 모든 프랑스 법인세 부과 규정과 동일 하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 해당 연도 이후의 3개연도가 소득조정 대상임
- 단, 예외적으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외국 과세 당국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은 소득조정 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소득조정 대상기간 근거 : 프랑스 조세절차법 L 188A)
- 납세자와 다른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상계 허용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규 정은 없으며,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 조세조약, 유럽중재협약⁴⁵⁾에 다른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세금 징수는 상호합의 절차의 전체 기간 동안 중지될 수 있으며, 권한 있는 세무당국간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연기됨 (*이전가격 과세 관련 세금 징수 기간 제한 근거: 프랑스 조세절차법 L 189A)

2 법인세(Cooperation tax)

가. 납세의무자

1) 일반적인 규정

-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으로써,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주식회사(Sociétés Anonymes, SA)
- 주식합자회사(Sociétés en Commandite par Actions, SCA)
- 유한책임회사(Sociétés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ARL)
- 단순주식회사(Sociétés par Actions Simplifiées, SAS)
 - 5년 이하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소득세(partnership) 적용이 가능

⁴⁵⁾ European Arbitration Convention



2) 간주법인(Legal Entity)

-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적용됨
- 협동조합(Sociétés Coopératives)
-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공공단체(Organismes Publics)
 - 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

3) 비과세법인

-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다음과 같음
- 이익단체, 공익단체 및 산림단체
- 민사사업법인(Société civils professionnells)
- 민사부동산 건설 판매법인(Société civils de construction-vente)
- 민사부동산 투자법인(Société civils de placement immobilier)

나. 과세대상

1) 속지주의 과세방법

- "법인세는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진 소득 및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상 프랑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다"라고 하여 법인에 대하여는 속지주 의를 원칙으로 함
- ❖ 근거 : CGI, art. 209 (조세일반법 제209조)
 - en tenant compte uniquement des bénéfices réalisés dans les entreprises exploitées en France et des bénéfices dont l'imposition est attribuée à la France par une convention internationale relative aux doubles impositions

2) 속지주의 과세방법의 예외

- (1) 전세계소득과세제도
- 지점의 법인세 신고시 해외지점의 소득을 본점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음
- 해외지점이 부담한 세액도 프랑스 국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

(2) 연결납세제도

- 프랑스 법인의 본점 및 해외 지점의 소득과 5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해외 에 있는 자회사이 소득을 결합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
-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기 전에 모회사가 자회사의 소득 중 '지분만큼의 소득' 을 모회사에 합산할 수 있는 제도

다. 과세소득의 산정

- 법인세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데, 이 순소득은 법인 의 사업연도 중 또는 사업연도 말에 이루어진 자산의 양도소득을 포함하며, 법 인의 영업결과를 의미함
- ❖ 근거 : CGI, art. 38 (조세일반법 제38조 제1항)
 - le bénéfice imposable est le bénéfice net, déterminé d'après les résultats d'ensemble des opérations de toute nature effectuées par les entreprises, y compris notamment les cessions d'éléments quelconques de l'actif, soit en cours, soit en fin d'exploitation



라. 주요 계정별 세무조정

1) 매출총이익의 산출

- 프랑스 회계기준상의 매출총이익은 회계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산출
- 세법상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산서 (facturation) 교부 시점에 따라 결정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저가법(원가와 시가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 (조세일반법 제38조 3항)

3) 주요 영업외 수익의 귀속시기

○ 수입이자 : 지급받기로 한 날

○ 배당금수입 : 지급받은 날

○ 국가등으로부터의 보조금 : 해당 보조금이 분배되는 날

4) 인건비

○ 조세일반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근로자등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상적 인 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5) 제세공과금

○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나,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벌과금등 법령에 규정된 것은 손금불산입

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이 법인의 과점주주(majoritaire) 또는 대표이사(associe difigeant)로부터 차

입한 경우,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 실질유효금리(taux effectif moyen pratique)를 초과하여 주주에게 지급된 지급이자

7) 기부금 공제

○ 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메세나(Mécénat, 예술후원자)관련이 있는 비용은 매출액 의 0.5%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공제

8) 사치성 경비

○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비라도 그 금액이 사치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우리나라의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손금 불산입 규정과 유사)

9)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과 정률법이 적용되는데,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에 아래의 가속배율(taux costant)을 적용한 상각률 적용

신규취득 자산의 내용연수	가속배율(taux costant)
3년 또는 4년인 경우	1.5
5년 또는 6년인 경우	2.0
6년 이상인 경우	2.5

마. 비과세소득 및 이월결손금

1) 비과세소득

- 자회사의 지분을 10%이상 가진 모법인(Sociétés méres)이 그 자회사로부터 받 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유동자산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수익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58 패 프랑스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비과세

○ 부동산 투자법인(Sociétés Immobilieres d' Investissement)이 부동산 임대소득과 과력하여 받은 이익은 법인세 비과세

2) 특정지역 소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 특정 경제적·사회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아래의 지역 소재 법인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법인세를 면제
- 일시적 법인세 면제 대상 (개발 필요 지역)
- 중소기업 투자 지원 지역 (PME), 지방자치단체등의 지원 지역 (ZAFR)
- 농촌 진흥 지역 (ZRR), 우선순위 도시 개발 지역 (ZUS)
- 도시 재개발지역 (ZRU), 도시 자유 지역 (ZFU)
- 고용 활성화 지역 (BER), 방어 구조 조정 지역(ZRD)

(3) 결손금의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 결손금의 이월공제는 기한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반면, 결손금의 소급공제 (carry-back)는 이전의 3개 사업연도까지 가능
- 공제될 이월결손금은 과세소득이 1백만유로까지는 전액, 1백만유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 법인세를 적용받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소급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6년까지 이월공제만 허용

바. 세 율

1) 일반세율

○ 프랑스 법인세 일반세율은 33⅓%

○ 법인세 산출세액이 763,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3%의 사회부담금을 추가로 부담

2) 경감세율

- 연간 매출이 7,630,000유로(부가가치세 제외)이하인 중·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38,120유로까지는 15%의 경감세율적용(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
- 장기보유주식, 장기보유벤처투자와 벤처캐피탈회사의 주식처분으로 인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0% 또는 15%의 세율 적용
- 장기보유 부동산 과다보유 상장주식(sociétés à prépondérance immobilière, SPI) 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9%의 세율 적용
- 특정 산업의 제조공정등, 특허 발명 또는 개발을 사용하여 획득한 라이센스등 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5%의 세율 적용
- 비영리단체의 자산 운용 소득에 대해서는 15%, 10%. 또는 24%의 세율 적용

사. 신고납부

○ 법인세를 적용받는 모든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

아. 2013년 법인세 주요 개정 내용

1)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세액공제(CICE) 도입

- 세액공제액 : 지급한 총임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 공제대상이 되는 지급한 총임금액의 최대한도는 최저임금의 2.5배임
 - 현재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은 월 3,564유로임
- 세액공제율 : 4%(2014년에는 6%)

60 패 프랑스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초과한 세액공제액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대신 조기 환급도 가능함
- 공제된 세액은 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배당이나 관리직 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2)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하

○ 2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한 주식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공제(participation exemption)가 자본이득의 (90%에서) 88%로 인하

3) 5% 법인세의 부가세(Sur tax)

-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출액이 2.5억 유로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납부
- 이 부가세는 2015년 12월 30일까지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적용
- 따라서, 최종적인 법인세율은 36.1%(= 33⅓×1.033×1.05)
 - 기본세율 : 33⅓
 - 매출액이 763만유로 초과 기업에 대한 부가세 : 3.3%

가. 납세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과 법인세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 법인세의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소득세에 대하여는 속인주 의 원칙이 적용
- 프랑스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단위(fover fiscal)임

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프랑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아래에 열거된 세 가지 조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개인은 프랑스의 거주자로 간 주(조세일반법 4조)
 - (Sont considérées comme ayant leur domicile fiscal en France au sens de l'article 4 A)
- 프랑스 거주자로 판단되는 요건 (3가지 중 하나 충족)
- ① 프랑스가 일상적인 주소지이면서 그의 세대가 고정적으로 거주하는 장소이거나 또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주된 거소지 일 것(a. Les personnes qui ont en France leur foyer ou le lieu de leur séjour principal)
- ② 납세의무자가 프랑스에서 주된 활동을 수행할 것[주된 활동이란 납세의무자 수입금액 의 본질적이고 주된 부분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함] (b. Celles qui exercent en France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salariée ou non, à moins qu'elles ne justifient que cette activité y est exercée à titre accessoire)
- ③ 납세의무자는, 프랑스에서 경제활동의 중심지를 가지고 있을 것(c. Celles qui ont en France le centre de leurs intérêts économiques)



2) 한·불 조세조약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프랑스의 납세의무자가 2개 이상의 나라에서 이중 거주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 한·프랑스 조세조약상 거주국가 결정 방법은 다음의 요건을 순차적으로 적용. (한 · 프랑스 조세조약 제4조)
- 이중 거주자의 거주 국가 결정 순서
-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using) ;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의 거주자
-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개인이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의 거주자
- ③ 일상적인 거소(Habitual abode) ; 개인이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국의 거주자
- ④ 국적(National); 개인의 국적
-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

다. 세대 구성

○ "프랑스에 단독으로 혹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거나 또는 프랑스 원천소득이 있는 자는 프랑스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조세일반법 제1조)라고 되어 있는 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단위 (foyer⁴⁶⁾ fiscal)임

⁴⁶⁾ foyer[fwaje] : 가정,가정 생활,안식처,가족 (= domicile, abri, famille), foyer fiscal 과세 대상 세대

1) 조세일반법 상의 부양가족별 수(part)

- 부양가족별 수 규정 [part는 '가족 수'를 의미]
 - 독신자, 이혼한 자, 별거중인 자, 과부 또는 홀아비 중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part
- 혼자 독거중인 자 중 여러 명의 성년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 1.5part
- 혼자 독거중인 자 중 여러 명의 자녀가 사망을 한 경우 : 1.5part
- 상이군인,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자 : 1.5part
- 결혼한 자 중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2part
- 미성년자 : 0.5part, 단 세 번째 아이는 1part
- 노약자 : 0.5part 중 40%
- 결혼자 중 한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 2.5part

2) 세대 구성원별 소득금액 산출 절차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족단위 소득 합산

1 단계

-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는 18세 이하의 자녀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구애를 받지 않음



2 단계 1단계의 가족단위 소득을 '가족 수(part)'로 나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되는 과세대상 순소득(revenu net global iposable) 을 산출하여 법정 가족 수(part)로 나눔



3 단계

세율 적용 (5.5%~41%의 초과 누진세율) 1part당 산출세액 계산



4 단계

3단계에서 산출된 세액에 2단계의 가족 수(part)를 곱함



라. 과세소득의 범위

○ 조세일반법 제12조에서는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실현하거나 같은 해에 처분한 이익 또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고, 또한 각 세대별로 매년 처분이 가능한 순소 득의 합계액에 대해 부과된다"고 규정

• 과세소득의 범위 규정

"L'impôt est dû chaque année à raison des bénéfices ou revenus que le contribuable réalise ou dont il dispose au cours de la même année

- ➡ 과세대상 소득을 아래의 8가지로 구분하여 열거함
- 봉급, 급여(Traitements, Salaires), 연금 및 종신연금(restes viagéres)
- 부동산임대소득(revenus fonciers)
- 산업 또는 상업소득(bénéfices indusriels ou comerciaus)
- 비상업소득(bénéfices non commerciaux)
- 농업소득(bcnéfices agricoles)
- 특정 법인 이사의 보수
- 특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plus value)
- 유동산자산소득(renevus de capitaus mobiliers)

1) 근로소득(Traitements, Salaires, restes viagéres)

- 근로소득금액의 산출방법은 총급여액에서 근로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바, 아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함
 - ∨ '총급여액의 10%'로 추계하는 방법(14,157유로 한도)
 - ✓ 실제 비용(frais réels)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는 방법
- 종신연금에 대하여는 수령자의 연령(30세~70세)에 따라 30%~70% 까지 추계 공제

2) 부동산 임대소득(revenus fonciers⁴⁷⁾)

-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
- 총수입금액은 약정에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필 요경비 또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된 금액으로 함
- 소규모 임대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15,000 유로 이한 경우에는 임대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을 임대수입금액의 30%까지 인 정함

3) 산업 및 상업소득(bénéfices indusriels ou comerciaus)

- 과세대상 소득은 산업 및 상업소득과 관련된 수입금액의 총액에서 이에 대응되 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
- 납세자는 자신이 기장한 장부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금액 산출
- 연간 매출액이 판매업의 경우 81,500유로(부가가치세 제외)이거나 용역업의 경우 32,600유로(부가가치세 제외)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기업과세제도가 적용됨
- 소규모기업과세제도의 경우 판매업과 임대업은 외형의 71%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용역업의 경우는 50%를 비용으로 인정함

《소규모기업 과세제도 요약 》

업 종	연간 매출액 (부가가치세 제외)	비용 인정 비율
판매업	81,500유로 미만	매출액의 71%
용역업	32,600유로 미만	매출액의 50%

4) 비상업소득(bénéfices non commerciaux)

○ 비상업소득은 의사, 변호사, 중개인등 상업적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자유직업소

⁴⁷⁾foncier[fɔ̃sje] 토지의, 부동산의



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함

○ 연간 비상업소득이 32,600유로(부가가치세 제외)이상인 경우에는 장부상 이익에 따라 결정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총수입금액의 24%를 비용으로 공제받는 소규모기업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5) 농업소득(benéfices agricoles)

- 농업소득이란 농업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소득을 의미함
-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외형에 따라 추계과세, 간편과세, 정상과세의 방법 이 있음

(6) 특정법인 이사의 소득

○ 소득세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사의 급여는 해당법인의 비용이 공제 되지 않는 대신 급여를 지급받은 이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함

마. 부동산 양도소득

1)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

- 건물 또는 토지
-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권리
- 부동산 법인(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 50%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비상장 법인)의 주식 양도

2)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

- 취득후 15년(동산의 경우 12년)이 경과한 부동산
- 양도자 소유의 주된 부동산 중 주된 주거로 이용된 부동산(단독주택 또는 아파 트등)

○ 부동산 및 이와 관련된 권리의 양도가액이 15,000 유로 이하인 경우

3)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아래의 양도소득공 제를 차감하여 계산함
 -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난해부터 매년 10%씩 공제(여기에 1,000 유로를 추가로 공제)
 -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0 유로만을 공제

4) 세율

-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19%
- 사회분담세 등 12.3%가 부가됨

5) 신고납부

○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달 이내에 소득자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함

바. 유가증권 및 동산 양도소득

1) 유가증권 등 양도소득

-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누진소득세율이 적용됨 (2013년 개정)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21%와 24%로 원천징수 후 산출세액에 서 공제
- 보유기간에 따른 아래의 소득공제가 적용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소득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2년부터 4년까지	20	
4년부터 6년까지	30	
 6년 경과 후	40	

2) 기타의 동산 등

○ 조세일반법에서는 경주용 말, 유람선, 귀중품, 수집품, 금, 백금등 기타의 동산 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규정함

사. 이월결손금·비과세

1) 이월결손금

- 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동일한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과 우선 적으로 상계
- 동일 소득에서 결손금이 상계되지 않고 남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
- 이월결손금은 6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나, 농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 우에는 각각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만 이월공제가 가능

2) 비과세

- 비과세 근로소득(조세일반법 제8조)
 - 국가등 공공단체가 지급한 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장애인에 대한 수당
- 비과세 부동산 양도소득(조세일반법 제150조);
 - 양도일이 속하는 날에 양도하는 납세의무자는 주된 거주 주택

- 납세의무자가 그의 가족과 자주 이용하는 주택의 양도
- 보상과 관련되어 교환되는 주택
- 양도가액이 15,000유로 이하의 부동산의 양도
- 취득한 지 15년 이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
-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조세일반법 제15조)
 - 본인의 주된 주택 또는 2번째 주택에서 세대원이 사는 경우
 - 개인적으로 무료로 임대하여 주는 경우
- 자본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일반법 제157조에서 사회적·경제적인 이유로 주택금 융으로 받는 소득 등 비과세대상 투자상품을 열거함

아. 세율(progressive tax rate)

【현행 프랑스세제상의 누진소득세율】

과세 구간(유로)	세 율(%)
5,963 াই	0
5,963 초과 11,896이하	5.5
11,896 초과 26,420이하	14
26,420 초과 70,830이하	30
70,830 초과 150,000이하	41
150,000초과	45

자.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법정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1) 프랑스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조세일반법 제164 B조)

- 프랑스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
- 프랑스에 소재하고 있는 동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

70 ■ 프랑스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프랑스에서 경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
- 프랑스에서 자유직업소득과 관련 활동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
- 프랑스에서 영리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
- 프랑스에서 이루어지는 양도소득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비상업소득인 자유직업 소득 : 33⅓%
- 예술인과 스포츠인 : 15%
- 동산소득의 경우 : 25%
- 투자소득의 경우 : 25%
- 소유지분이 25%인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 : 16%

3) 비거주자가 받은 급여 및 연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연간금액이 14,245 유로 이하 : 0%
- 연간금액이 14,245 유로 초과부터 41,327 유로 이하 : 12%
- 연간금액이 41,327 유로 초과 : 20%

차.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는 가족단위로 하여 주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이듬해 3월 1일까지 자진신고하여야 함

카. 세대별 종합납세의무자

1) 결혼한 세대의 경우

○ 결혼제도의 형식에 불구하고, 동거하는 자(concubinage)가 아닌 결혼한 세대의 배우자는 공동 납세의무가 있음

2) 법률로 인정된 부양가족의 경우(personnes à charge de droit)

○ 미성년자 중 독신자(또는 연령에 불구하고 장애인의 경우) 또는 장애인등 납세 자의 법정부양가족에 대하여 납세자는 공동 납세의무가 있음

3) 자발적인 부양가족의 경우(personnes à charge par la voie rattachment)

-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시 아래에 열거된 자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부양가족 신고(가능) 대상자
- ① 성년자녀 중 독신자, 과부의 자녀, 이혼자, 별거중인 자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한 자 중 아래의 자
 - ➡ 18세부터 21세까지, 25세 미만자 중 학업중인 자, 연령에 불구하고 군 복무중인 자
- ② 결혼한 자, 이혼자의 자녀,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자 가운데 과부 또는 별거중인 자 중 아래의 자
 - → 21세 미만인 자, 25세 미만자 중 학업중인 자, 연령에 불구하고 군 복무중인 자, 연령에 불구하고 장애인인 자

타. 2013년 스톡옵션 과세방법 개정

- 2012년 9월 28일 이후 부여된 스톡옵션을 실행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 발생한 차익(gain)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나, 과세시점은 처분 시로 이연됨
- 2012년 9월 28일 이전에 부여된 스톡옵션을 실행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 발생한 차익(gain)은 자본이득으로 보아 30%(자본이득이 15만 2,500 유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41%를 적용할 수 있음)의 단일세율을 적용
 - 다만 보유기간(옵션부여일부터 처분일까지의 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함
 - 보유기간이 6년인 경우 적용될 단일세율은 18%(자본이득이 15만 2,500유로

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30%로 적용할 수 있음)로 떨어짐

4

사회보장세(Social Levies)

가. 일반사회보장세(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

- 일반사회보장세는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의 마련을 위해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여 징수하는 세금임
- 사업활동 및 보상관련 소득과 재산 관련 소득의 일정율로 부과

1) 사업활동 및 보상 관련 소득

○ 일반사회보장세는 소득세 계산시 산출된 소득에 각종 수당을 더한 후 7.5%(소 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8.2%)를 곱하여 산출함

2) 재산 관련 소득

○ 토지임대소득, 동산투자소득, 부동산 투자소득 및 이들의 양도소득 등에 대하 여, 8.2%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함

나. 사회부채상환세(Contribution p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CRDS) 및 2.2% 사회세(the 2.2% social levy)

- 사회부채상환세는 복지관련 국채 등의 상환 재원의 마련을 위해 일반사회보장 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0.5%의 세율로 징수됨
- 2.2%의 사회세는 조세일반법 제125 A에 규정하고 있는 투자소득 및 소득세가

면제되는 투자소득과 조세일반법 제 150조 U내지 제150조 UC에 열거된 부동 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2.2%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함

5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가. 납세의무자

- 사업자는 독립적인 지위
 - 독립적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자를 의미하며, 자기 계산 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 경제적인 활동이란 모든 제조활동, 상업활동 또는 용역활동을 의미함
 -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형재화 또는 무형재화를 운영하 는 경우는 경제적인 활동으로 간주
- 국가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 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포함

나. 과세대상 거래

- ① 유럽연합국가 내의 재화의 공급
- ② 유럽연합국가 내의 용역의 공급
- ③ 유럽연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재화의 수입

1) 과세대상 거래의 성립 요건

-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어야 함
- 재화와 용역은 납세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함



○ 해당 거래가 유상이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성격이 있어야 함

2) 재화의 공급

○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유형재화의 처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되, 이에는 전기, 가스, 열등을 포함함(조세일반법 제256조-1)

3) 용역의 공급

- 용역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 이외의 거래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무형재화의 양도 또는 임대, 사용허락, 가공 및 건물 공사는 용역의 공급으로 가주
- 주식,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분, 채권 및 기타 증권의 거래는 포함되나, 상품의 등록권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부여된 부동산 혹은 부동산의 일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및 지분의 등록권은 제외
- 원칙적으로 자유직업과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다만, 의료 용역 중 공익 목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 모든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임
 - 동산임대의 경우에는 신품 또는 중고품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 부동산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사업 목적을 위해 임대한 동산, 장치, 사무실등 의 임대료 수입은 과세대상이나, 나대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에서 제외됨
 - 교육 용역은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제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 세대상에 포함됨

4) 자가소비의 경우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받은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함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생산, 건설, 추출, 변형, 구입, 수입 또는 유럽연한 회원국으로부터 취득한 재화가 자기 기업의 필요를 위해 충당한 경우는 자가소 비의 일종으로 가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
- 자가소비의 경우에는 해당 재화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5) 티지역내 거래

-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다른 프랑스(아래의 지역 포함) 및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함
 - 프랑스 본토
 - 코르시카(Corse)
 - 모나코 왕국(단, 프랑스 법령이 실효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에 한함)
 - 과달루프(Guadeloupe)
 - 마르티니크(Martinique)
 - 헤위니옹(Réunion)
- 사업자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유상으로 유형재화를 취득하는 경우, 그 유형재화의 판매자가 속한 국가(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판매자 또는 취득자가 유럽연합 회원국 중 다른 나라로부터 프랑스로 탁송되거 나 운송된 유형재화의 처분권을 얻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취득 한 것으로 간주됨

다. 과세표준

○ 프랑스 부가가치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적용되어, 부가가 치세액은 매출액에 세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함



부가가치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세율 - 매입세액

1) 매출액에 포함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
- 주된 거래에 부수되어 받은 비용, 수수료, 이자, 운송비 등
- 자가공급 및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취득시
 - 재화인 경우에 그 재화 또는 유사재화의 구입가격
 -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금액
- 여행 및 관광알선사의 경우, 고객이 지불한 금액과 여행대리점이 운송기간, 호텔, 식당, 극장, 기타 고객을 위하여 제공된 것에 대해 사업자 등이 청구한 금액과의 차액
- 건축업의 경우, 건축에 소요된 시장가격, 청구가격 또는 견적가격
- 주택임대용역의 경우, 자가공급은 부동산의 재구입가격, 유상양도 또는 법인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 보상가격 또는 출자에 상응하는 가격

2)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과세표준 계산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는, 에누리, 반품 및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기타 요소등이 있음

3) 매입액에 포함되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영역의 공급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재화의 수입액은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 계산시 매입액에 포함
-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구입 사실이 적격 영수증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4)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매입액

○ 숙박비, 음식비, 접대비 및 극장요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라. 세금계산서

- 프랑스는 세금계산서라는 용어는 없으며 그 대신 '영수증'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 영수증에 공급자, 공급하는 자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연월일, 매출금액, 부가가치세액 등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 모든 납세자는 다른 사업자 또는 법인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수증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함
-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영수증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세율,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및 위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
 - 조세일반법 제262조 제1항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는 판매자 및 구입자의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번호 및 '프랑스 CGI 제262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 치세 면세'라는 표시
 - 용역의 제공의 경우에는 제공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조세일반법 제259 A조의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구 분	납세의무 성립	납세의무 확정	
유형재화의 양도	재화의 인도	재화의 인도	
용역의 제공	용역의 완료	용역대금 지급	
수입	통관	통관	
EU 국가로부터 취득	재화의 인도	납세의무 성립 후 다음달 15일	
자가공급	처음 이용할 시점	처음 이용할 시점	
판매용부동산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취득	등기시점	등기시점	

바. 세 율

1) 정상세율

○ 부가가치세의 정상세율은 19.6%임

2) 감면세율

- 5.5% 부가가치세율 적용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율 5.5% 적용 대상
- 물, 알코올 성분이 없는 음료수
- 식료품에 공하는 생산품
- 농업생산품, 어업생산품, 양어장 생산품 및 가금사육장 생산품 중 변형되지 아니한 것
- 도서, 의료기기, 문화용역
- 2.1%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율 2.1% 적용 대상
 - 극장에서 드라마,오페라,뮤지컬,무용 등의 첫 번째 상영과 서커스 제공 용역
 - 의사 처방, 약국 판매 및 인간에 소용되는 제조약품등
 - 텔레비전 수신장치 사용료

사. 면세 및 영세율 제도

1) 면세거래(조세일반법 제261조)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
 - 사업자 단체의 성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거래, 농수산물의 경우
 - 의료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 부가가치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 교육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 중고품, 산업폐기물 및 폐수집품의 경우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 기타 조세정책 목정상 면제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의 징수가 어려운 경우
 - 부동산 거래 및 임대의 경우

2) 영세율

○ 사업자에 의해서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됨

아. 표준감사파일(SAF-T) 제출 제도

- 2014년 1월 1일부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VAT) 신고 시 표준감사파일(SAT-F) 을 제출하여야 함
- 표준감사파일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표준화된 사업정보임

80 ■ 프랑스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표준감사파일은 세무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나 납세협력의무의 간소화를 위해 작성됨
- 표준감사파일(SAF-T)을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과세관청 재량의 추계절차(arbitary assessment procedure)에 의해서 과세소득을 결정할 수 있음

6

상속세(Droit de Succession)

가. 납세의무자

○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및 유증을 받은 자

나. 과세물건

- 프랑스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프랑스에 워천을 둔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됨
- 상속세 과세대상은 조세조약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프랑스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프랑스 국가 이외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됨
 - 상속당시에 프랑스의 거주자이면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6년 이상 프랑스 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프랑스의 재화와 국외재산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됨

다. 단순증여

- 단순증여라 함은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는 증여로서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 현금, 보석, 수표 등의 증여세 부과시 사용되는 개념
-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단순증여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부과세 상 속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됨
- 상속권이 없는 사람에게 단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라. 비과세

1) 피상속인의 원인에 의한 경우

- 전물 군인 또는 테러행위에 의한 희생에 따라 상속이 발생된 경우
- 국가, 공공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 증여한 재산
- '시민연대계약'과 관련된 자의 경우 및 조세일반법에 규정된 장애인의 형제, 자매, 홀아비, 과부, 독신자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 면제

2) 상속재산의 성질에 따른 경우

- 사망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업, 상업, 예술, 농업 및 기 타 활동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지분 및 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50% 면제
- 산업, 상업, 예술, 농업 또는 자유직업 활동을 하는 개인기업의 동산 및 부동산 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 가치의 50%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마.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자산총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재산가액에 상속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자산총액 - 부채공제액 - 상속비용

2) 상속재산의 평가

○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해당자산의 평가액을 기초로 하되, 부동산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시가에 의함

82 Ⅲ 프랑스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3) 세 율

- 직계상속과 배우자 상속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5%에서 40%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 방계 및 기타상속의 경우에는 35%에서 60%까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7

증역세(Droit de Donation)

가. 납세의무자

-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 수증자가 프랑스 거주자인 경우에는 프랑스 국내 증여분과 해외 증여분을 합하여 프랑스에서 납세의무가 있음
 - 프랑스 비거주의 경우에는 프랑스 내에서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가 있음
- 거주자란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에 프랑스의 거주자이면서 증여 전 10년 동안 6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의미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자를 의미함

나. 과세대상과 비과세

1) 과세대상

○ 증여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됨

2) 증여세 비과세대상

- 상속권이 없는 사람에게 단순증여를 하는 경우
 -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단순증여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상속세의 경우

와 동일함)

- 이혼 후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18세까지 한도로 재정보조금 지급받는 경우 매년 2,700유로까지는 증여세가 면제

다. 과세표준과 세율

- 증여세 과세대상의 평가 규정은 상속세와 동일(시가평가)하나, 과세표준 산출시 부채 공제는 없음
-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의 경우와 동일함
 - 직계상속과 배우자 상속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5%에서 40%까지의 초과누진세 적용
 - 방계 및 기타상속의 경우에는 35%에서 60%까지 초과누진세율 적용

8 부유세(Wealth Tax)

가. 납세의무자

1) 거주자의 경우

- 프랑스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순자산 금액이 130만유로 이상인 자
- 부유세 납세의무자는 개인단위가 아닌 가족 단위임
 - 주된 소득자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순자산 합계액이 130만유로 이상인 경 우에만 적용됨

2) 비거주자의 경우

○ 프랑스의 비거주자는 프랑스 내에 소재하는 순재산의 가액이 130만유로 이상인 경우 부유세 납세의무가 있음

84 Ⅲ 프랑스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순재산가액의 계산시에는 프랑스 소재 재산 중 '금융투자자산'을 제외한 재 산에 대하여만 부유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나. 과세물건과 비과세

1) 과세물건

○ 과세대상 재산은 부동산(토지, 농지, 주택, 아파트 등)과 동산, 자동차, 금융재 산, 펀드 등)으로 구성됨

2) 비과세 물건

- 소규모 기업의 주식, 골동품, 예술품 및 수집품, 산림, 연금
- 지적재산권, 특허권 및 상표권, 장기간 동안 임대 대상이 되는 농지

다.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 부유세 과세표준인 순자산은 보유자산의 시장가치에서 부채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세 율

보유자산의 순자산	세 율(%)
130만유로 초과 300만 유로 이하	0.25
300만유로 초과	0.50

3) 자산과 부채의 평가

- 자산의 평가
 - 순자산의 평가시 시장가치의 계산은 상속세 계산시 적용되는 시장가치(매년 1

월 1일 기준)를 의미함(조세일반법 제88조)

- 부채의 평가
 - 납세의무 성립일인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유세 납세의무가 있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원, 미성년자, 장애인의 부채액을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
 - 부채의 평가는 상속세의 경우와 동일함

9 출국세(Exit tax)

가. 개인의 납세의무

1) 적용대상

○ 프랑스 거주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이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로 이전 후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출국세가 소급적용됨

2) 적용요건

- 가족과 함께 직접적 가접적으로 최소 1%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프랑스 거주자
-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직접·간접 지분 평가액이 1.3백만 유로를 초과 하는 프랑스의 거주자

3) 기타

- 출국세는 미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적용됨
- 출국세는 8년 후에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납세자가 귀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세 의 납부를 면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



나. 법인의 납세의무

- 2012년 11월 14일 이후 본사나 고정사업장(PE)을 EU나 EEA 회원국으로 이전 하는 법인은 이전한 자산과 관련한 미실현 자본이득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함
 - 2012년 11월 14일 이전에는 본사를 EU나 EEA 회원국으로 이전하더라도 고 정사업장(PE)이 프랑스에 있으면 출국세를 부담하지 않음

$oxed{10}$ 세무조사 제도와 납세자 권리보호

가. 세무조사시 협력의무

1) 세무조사 협력의무에 대한 규정

-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법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납세자 헌장'은 세무조사 등에 대한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정하고 있음
 - 조세절차법 제10조는 납세자 헌장 규정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법적 기속력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납세자에 대한 기속력 여부는 명시하지 않음

2) 세무조사 등에 대한 납세자의 협조 사항

-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된 경우 조사자에 대하여 책임있게 행동
- 정중하게 대하고, 양질의 조사환경을 제공
- 사업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 조직구조, 회계관리, 내부통제체계 등을 설명
- 조사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나 기록을 적기에 제공 또는 자유로운 접근 허용
- 불필요한 업무가 최소화되도록 설명
- 조사 방해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사법처리될 수 있음 등

나. 자료제출 요구에 납세자가 불응할 경우

- 납세자 또는 제3자로 인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과 세표주을 "인정과세"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조세절차법 제74조)
 - 인정과세; 납세자의 소비수준 등 과세관청이 보유한 자료에 기초하여 과세표 준을 추계하여 과세하는 절차로, 소득세의 경우 주거지 임대료, 보유나 리스 차량 가치, 회원권, 여행비용, 가전제품, 보석 및 귀금속 등을 기초로 소득수 준을 추계하는 제도 유영
 - "인정과세"에 의해 과세표준이 결정될 경우, 연체이자와 별도로, 추가 납부할 세금의 10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일반세법 제1732조),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

다. 관련 판례 등

1) 프랑스 행정위원회(최고 행정법원) '08년 10월 6일 판결

- 세무조사 관련 판례
 -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납세자는 스스로 납세자에게 주어진 보장의 혜택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세무당국이 '납세자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아도 절차상의 하자로 가주되지 않는다."
 - "이는 인정과세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다시 결정한 경우에도 동일하며, 따라서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납세자는 행정위원회에서 전혀 기대할 바가 없다."

2)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납세자에 대한 보장

○ 세무조사는 기업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과세관청 사무 실에서 수행될 수 있고, 이 경우 인계된 관련 서류는 조사종료 이전에 반환되 어야 함

- 세무조사관의 현장 조사에서 납세자의 반대 토론권이 보장되어야 함
- 조사대상 기간은 과세연도부터 3년 전 연도까지로 제한됨
- 납세자가 선택하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일정규모 이하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3) 조사거부 등의 경우 입증책임

- 프랑스에서 조사거부 등 납세자나 제3자 귀책사유로 세무조사 등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임
- 과세당국은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경우 "반대절차"를 거쳐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다른 과세결정을 하게 되는데,
 - 납세자의 조사거부 등 납세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는 반대절차(납세자 와의 반론권 보장) 없이, "인정과세"나 기타 과세 결정을 유효하게 내릴 수 있음(조세절차법 제56조)
 - 이렇게 유효하게 결정된 세액에 대한 취소나 감액을 위해서는 추징조치에 정당한 근거가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조세절차법 제191~제195조)

4) 입증책임관련 조세절차법 규정

- 표준 절차에 의하여 세액이 정해진 경우, 감액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입증책임 을 집(제191조)
- 제59조(과세결정과정에서 납세자가 도 직접세위원회나 국가 직접세위원회에 이 일를 제기)에 따른 위원회에서는 국가가 입증책임을 지나, 회계기록 등에 심각 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짐(제192조)
- 세액이 결정된 경우, 세액의 취소나 감액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부 답(제193조)
- 직접세, 부가세, 등록세, 인지세 등과 관련된 조세범칙처벌을 위해서는 납세자 의 악의 또는 사기 행위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정부가 짐(제195조)

11 2013년 개정세법 요약

가. 법인세 부가세(sur-tax)의 신설

-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출액이 2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 해서는 산출세액의 5%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함
- 이 부가세(sur-tax)는 2015. 12. 30일까지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함
- 따라서 최종적인 법인세율은 36.1% (기본세율 : 33.33%)
- 매출액이 763.000 유로 초과 기업에 대한 사회 추가요금 : 3.3%

나. 주식처분 관련 공제금액 인하

○ 2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공제가 자본이득의 88%로 인하됨(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본이득이 90%까지 공 제됨)

다. 경쟁력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도입

- 2013. 1. 1부터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세액공제(CICE)를 도입함
- 세액공제액 : 지급한 총임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 다만 공제대상이 지급한 총임금액의 최대한도는 최저임금의 2.5배임
- 세액공제율 : 4%(2014년에는 6%)
- 초과한 세액공제액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대신 조기 환급도 가능함
- 다만 공제된 세액은 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배당이나 관리직 급 여의 재원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법에서 정한 용도는 주로 투자, 연구, 교육, 채용 등임
- 프랑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감시 감독할 예정



라.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액 축소

○ 공제될 이월결손금은 과세소득이 1백만 유로까지는 전액, 1백만 유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세소득이 1백만 유로까지는 전액, 1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마. 법인세 예납세액 납부대상 범위 확대

- 추정된 당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당기 법인세에 대한 예납액의 계산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서 매출액이 2.5억 유로 이상 인 기업으로 확대함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는 사업연도 중 총 4회에 걸쳐 예납한 후 법인세 신 고시 차액을 납부하거나 확급 받음
- 각각의 납부기한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임
-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임

바. 자본소득의 과세방법 개정

○ 대부분의 자본소득에 대해 그동안 허용해오던 원천징수를 통한 분리과세제도를 철폐하는 한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로 자본소득을 종합과세하도록 개정함

사. 세율 및 특별세 신설

- 15만유로 이상(한 기구의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눈 소득 기준)의 소득에 대해 45%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신설
- 100만유로(개인 1명의 소득 기준)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7% 세율을 적 용하는 특별세를 신설함



- 1. 프랑스 투자의 이해
- 2. 현지의 주요 지역 정보
- 3. 프랑스의 투자 형태 및 절차

1

프랑스 투자의 이해

가. 외국인 투자 정책 및 투자 유치 동향

1) 투자유치 정책 및 전망

- 프랑스는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연합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인력의 숙련도와 생산성이 높고 외국자본에 대단히 개방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
- 프랑스 올랑드 정부(2012.5월 ~2017. 5월)는 '긴축과 분배' 중심에서 '긴축과 성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음
 - 세입 확대를 통한 '先분배'를 강조해온 올랑드 정부는 『갈루아⁴⁸》보고서』를 계기로 '先성장'을 통한 재정확보 중심으로 정책을 선회함
 - 2012. 11월 프랑스 정부는 조세부담 경감과 투자활성화가 핵심 내용인 『갈루 아 보고서』를 반영한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사르코지 정부		올랑드 정부
구조조정을 통한 고강도 재정긴축	>	성장 중시와 양극화 해소

구 분	주 요 내 용		
기업 세금부담 경감	· 200억 유로 경감(2013년 100억, 2014~2015년 100억 유로) · R&D 투자세액 공제, 재정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 정부투자은행(BPI)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대출 보증(5억 유로) · 5개 우선분야의 중소기업에 투자(20억 유로)지원		

⁴⁸⁾ 갈루아 : 미테랑 정부 시절 고위 관료로 재직하다 시라크 행정부 시절에는 에어버스의 모기업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SD)의 CEO로 활동했으며, 올랑드 대통령 취임 후 국가경쟁력위원장에 임명됨

- 프랑스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및 산업 부흥"을 내걸고 출범하여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지원을 통한 실업난 해소 및 국내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세제를 개편할 계획
- 프랑스 정부는 일찍부터 외국인 투자 진출을 환영해 왔지만 최근에는 더욱 정 책적으로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고 대부분의 투자 지원 조치가 지방 정부 관할 권에 소속되면서 각 지방 정부는 서로 경쟁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
- 내국인(법인)대비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차별 대우는 없고 프랑스에서는 부동산 취득 및 소유에 있어서 내국인에 비해 거주/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 규정도 없음(예를 들어 비거주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이나 정부 기관의 특별한 허가 등이 요구되지 않음)
-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송금 제한이 없으며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송금한 송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취득 후일정 기간 내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제한도 없음
- 프랑스 투자청(AFII: Agence Françise pour les Investissements Internationaux)은 경제산업고용부장관 및 국토균형발전장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부관계자 7명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Conseil d'administration)와 국내 및 해외조직(27개)으로 구성됨
 - 투자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자원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자신청 서를 작성, 제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투자기업이 정부부처, 지방당국, 정부기관 및 기타 투자기업 지원기관과 접촉하도록 도와주는 기능 을 수행
- 프랑스 정부는 지역에 산재한 71개 혁신클러스터(Pôes de compéitivité)를 활용 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집적화 전략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지역개발 우선지역(PAT, Prime d'amenagement du territoire) 보조금 제도는 개발 취약 지역 내 기업 입주 촉진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 내 입주 및 고용창출 예정 기업을 대행하는 재정적 지원으로, 2007~2013년 지



정된 PAT에서는 대기업은 전체 투자금액(토지, 건물, 생산설비)의 $10\sim15\%$ 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sim35\%$ 까지 지원 가능함

○ 따라서 프랑스는 지속적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투자지로서의 매력을 강화하고 있고 투자관련 안전보장, 투자 및 임직원 입국절차 간소화 추진,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고용계약제도를 도입(정식 직원 시험기간 등) 했으며, 접근성이 용이한 초고속 열차인 TGV 등 교통망과 비교적 저렴한 통신비 및 인터넷 망 확충도 추진 중임

나. 프랑스의 투자환경49)

- 프랑스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 세계 5 대 경제 및 무역국이며 3대 투자 유입국가이자 4대 투자 유출국가임
- 인구 정책의 성공으로 출산율이 2.1에 달하며 서유럽 국가 중 인구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력 부족 현상이 가장 적 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내수가 경제 성장의 주 원동력이 되고 있는 현재 선진국 기업들이 투자를 선호하는 국가이고 창조성과 뛰어난 직업의식을 겸비한 프랑스 근로자들은 세계적으로 결근율이 낮은 근면한 인력으로 평가받아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보다 앞선 노동생산성을 인정받은 국가임
- 원자력 발전소의 발달(전체 전력의 75%)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전기료가 가장 낮으며 전국 어느 곳에나 연결된 기차, 항공 및 도로망의 발달과 전국토 98%에 걸쳐 있는 유·무선 통신망의 발달 등으로 교통비 및 통신비가 저렴함
- 또한 증권 시장의 발달로 사업자금 조달 여지가 많으며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 이 운집해 있어 금융시장이 극히 풍부함
- 투자 유치 활동 기관이 제시한 프랑스의 우수한 투자환경

^{49) 2013}년 KOTRA 자료 일부 참조

- KPMG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는 기업 경비 면에서 싱가포르 및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평가됨
- 전력 및 가스 사용료 면에서 미국, 독일보다 저렴하고 전기세의 다양성 면에 서는 세계 1위임
- 파리 및 수도권지방(ILE-DE-FRANCE)은 사무실용 면적 면에서 영국에 앞선 유럽 최대 규모로 파악됨
- 임금 면에서도 프랑스는 독일 및 영국을 앞섰으며 제조업 종사자 임금 면에서 유럽 15개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임금 국가 중 하나이며 미국의 임금 수준 과 비슷함
- 파리의 경우 세계 500대 글로벌 기업들의 본부 수(22개)면에서 뉴욕, 런던 및 북경을 능가한 세계 2대 본부 유치 도시임

다. 프랑스의 투자제도50)

- 프랑스 정부의 외국 투자 기업 보조 활동이 활발하고 EU 단일 시장에서의 기업간 건전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원국은 외국 직접투자 프로젝트 이전에 EU에 보조금을 요청해야하는데, 외국 투자 기업의 규모, 투자액, 투자 프로젝트 대상 및 고용창출 인원 등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됨
- EU의 이러한 규정 범위 내에서 회원국 정부는 특정 분야의 경제활동 개발을 자유로이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6개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함
- EU가 인정해준 경제 개발 미개척 지방 또는 산업 재배치 지방 내 생산투자에 관한 지방정부의 보조(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15%, 중소기업의 경우 25%까지)내용 아래와 같음
 - 기업의 R&D 프로젝트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한 R&D 보조(R&D 프로젝트를

^{50) 2013} KOTRA 자료 일부 참조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프랑스 거의 전지역내 투자 시 창출 고용자 1명당 2만 5천 유로의 국토정비 보너스 보조)

- 인력 양성 프로젝트에 기업을 동반할 수 있는 봉급자들의 직업 훈련 보조
- 장기 실업자, 청소년 무직자 등 특정인에 대한 지방 또는 중앙정부의 고용 보조(지방 투자의 경우 창출 고용자 1인당 만 5천 유로까지 국토정비 보너스 지원)
- 국토 전역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 보조
- 경쟁력 클러스터(66개)에 대한 프랑스 정부 지원금은 5년 동안 15억 유로이며 동 지역 내 기업의 경우 영업세 면제
- 프랑스에서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CFE(기업수속센터; Centre de Formalites des Entreprises)를 통하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따라서 외국 직접 투자 기업들의 세금 관련 행정업무 창구 일원화 및 전자식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 등 각종 행정 수속 및 절차가 현대화 및 간편화 됨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가 분석한 투자매력도 순위》

구분	순위	1,2위 국가
기업 연구개발 관련세제(2009)	1	프랑스, 벨기에
상표권 출원수(2011)	1	프랑스, 오스트리아
전기요금(2011)	1	프랑스, 스웨덴
투자펀드 유럽시장 점유율(2011.12월)	1	프랑스, 독일
 EU 항공여행객 수(2011)	2	영국, 프랑스
	2	네덜란드, 프랑스

○ 투자우선지원 권역

- '07년부터 '13년까지 유럽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프랑스의 지자체 지원(aides à finalité régionale: AFR) 지역별 설정에 따라 지원금 상한은 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10~15%, 중소기업의 경우 20~35%생산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금의 최대 총액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리적 위치와 회사의 크기에 따라

산출되는데 투자 프로젝트의 규모가 5,0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정부 지원은 EU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감소됨

- 지역개발보조금(Prime d'aménagement du territoire: PAT) PAT 보조금은 고용 창출 수에 의거하여 고용창출 수 및 투자 총액을 고려해 15,000유로 상한을 정 해 지급함
- 주요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 면제
 -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의 면제는 기업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즉시 자 동적으로 제공됨
 - 면세 대상 세금은 지역경제기여세(CET) 및 법인세와 재산세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지방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면제기간(2~5년)과 면제 규모가 정해짐
 - 그러나 지방당국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일부 면제조치는 자동적으로 5년간 적용되고 법인세 면제는 주로 군구조개편이 진행중 이거나 실업률이 높은 구역처럼 특정한 지역적 환경에서 7년간 제공되며 제조 분야에서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투자자는 2년간 세금이 면제됨
 - 사회보장 부담금의 면제는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 비율을 줄여주는 것으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 프로젝트가 경제 재개발 프로그램이 진행중인 지역에 소재해야하고 프로젝트 소재지가 EU가 승인하는 지자체 지원 권역과 우선 개발 권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부담금 면제 외에도 위에서 EU승인 지역에서 기술된 조치가 함께 제공될 수 있음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당 3년간 20만 유로(de minimis : 최소 허용 원조)로 면제조치가 제한됨
- 지차체 지원 권역 외에서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
 - 프랑스의 다른 지역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지원이 가능함
 - 지원상한은 중견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7.5%, 소기업의 경우 15%임(3년간 20 만 유로를 택하는 편이 더 유리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지원(FDPMI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부 기금)으로,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당국은 주요 부품 기술로 이루어진 설비의 매입을 위해 중소기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지원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가능하며 특히 지자 체 지원 권역에서 주로 이루어짐

- 중소기업을 위한 부동산 지원(일 드 프랑스 지역 제외. 단, 도시빈민구역 (ZUS)이나 농촌 재개발 지역(ZRR)은 예외)
-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정한 고용 취약지구(ZRU, ZRR, ZFU, ZRD)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특수 직업훈련을 할 경우,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장세 감세율은 대기업 25% 및 중소기업 35%이며 다른 직업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 및 직업훈련을 할 경우에는 대기업이 60%, 중소기업이 70%의 사회보장세 감세 혜택을 받게 됨
- 유럽국가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법인세 제도(CIR, Créit d'impô recherche)운영을 통한 혁신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음
 - 이 감세제도는 최초 신청 기업에 대해 신청 첫해에는 연구개발 지출액 1억 유로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세율 30%를 그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액에 대해 5%를 적용하는데 투자 첫해에는 감세율을 40%로 2년째에는 35%로 상향 조 정하여 투자부담을 더 많이 덜어 주고 있음
 - 2013년부터 프랑스 소재하는 모든 중소기업(고용 규모가 250명 미만)들은 연 구개발비의 20%(연 40만 유로 한도)까지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음
- 프랑스는 투자금지법은 없으나 사회 공익을 해치는 사업이나 환경오염을 유발 하여 천연 자원을 파괴하고 국민 건강이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사업은 사전 허 가를 받지 못할 경우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내국 기업도 동일함
 - 프랑스는 2005년 12월 30일자 시행령(Decret No2005-1739)에 외국인 투자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한 분야를 다음과 같이 공시함

- 외국인 투자시 사전 허가가 필요한 분야
 - 투전놀이, 개인의 안전을 해치는 산업으로 분류된 분야
 - 국민의 건강을 헤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병원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관련된 연구, 개발 및 생산활동
 - 원격 도청 및 우편물 가로채기용으로 제조된 장비와 관련된 사업,
 - 정보기술시스템 및 상품에 의해 제공되는 안전 평가 및 인증 서비스업
 - 위험한 시설을 관리하는 민간 또는 공기업과 체결한 계약 관계가 있는 기업의 정보시 스템 안보분야(이 중 기술 상품과 관련된 일부 사업)
 - 암호풀이 서비스업
 - 국방 비밀을 알고 있는 기업이 행하고 있는 사업,
 - 군사용 무기, 탄약, 화약 및 폭발물질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업(프랑스 국방부용 장비공급 또는 조사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사업 등이 포함)

라. 한국 기업의 프랑스 투자현황51)

1) 투자 일반 내용

○ 대불 투자 첫 해인 196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총 누적 투자규모는 503건에 13억 2002만 달러임

^{51) 2013} KOTRA 자료 일부 참조



《한국의 연도별 대불 투자 현황》

(단위 : 건, US \$ 천)

				(111 : 13, 00 4 13)
연도	신고건수 (당 기간)	신고건수 (누계)	투자액 (당기간)	투자액 (누계)
1968~2000	179	213	272,046	272,046
2001	12	191	25,297	297,343
2002	17	208	90,421	387,764
2003	9	217	13,396	401,160
2004	15	232	39,275	440,435
2005	35	267	24,721	465,156
2006	23	290	29,157	494,313
2007	30	320	33,463	527,776
2008	47	367	29,555	557,331
2009	41	408	264,403	821,734
2010	34	442	338,151	1,159,885
2011	44	486	13,759	1,173,644
2012.9월	17	503	146,373	1,320,01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2년 12월 18일 기준)

- 2009년과 2010년 투자가 급증 한 후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현지 경제 및 기업 활동 여건이 악화되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
- 2009년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의 2억 4,500만 달러에 달하는 Areva 우라늄 농축공장 지분 투자 건이 두드러졌고 2010년에는 국민연금이 파리 근교의 초대형 쇼핑몰(오파니노) 지분 50% 인수를 위해 2억 2,300만 달러를 투자하였음
- 한국의 대 프랑스 투자 누적액은 2010년 말 기준, 1,500만 유로로 57위를 차지했고 한국 기업을 모기업으로 둔 투자기업은 44개사(29개 그룹 소속)로 고용 규모는 4,300명 이상임

2)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별 투자현황

○ 2007년부터 2011년 기간 중 투자 건의 절반 정도가 기업 서비스 분야임

《최근 5개 연도별 프랑스 투자 현황》

(단위: 건)

투자 분야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업 서비스	2	1	1	1	1
본부	-	1	1	-	-
생산/조립	-	1	-	-	-
R&D,엔지니어링,디자인	-	-	-	2	-
개인 서비스	-	-	1	1	-
	2	3	3	4	1

자료 : 프랑스 투자청(AFII)

○ 소자본 투자를 제외하고 프랑스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태평양화학, 삼성전자, LG전자, 한진해운, L&H 코리아, 동양어패럴, 한국타이어, 홍진크라운, 금호타이어, 상지건설, 우영메디컬, 제일월드와이드, 대한한공, 아시아나항공 등 20개 정도임

3) 주요 투자기업의 최근 동향

- 최근 한류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 토종브랜드 화장품의 인기도 높아짐
- 아모레퍼시픽은 90년대 초부터 글로벌브랜드 전략을 추구하며 프랑스에 공장을 설립해 현지 생산 기반을 마련함
-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까지 글로벌 시장으로 1조 2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전체매출의 14% 수준인 해외 매출 비중도 2015년까지 29%로 확대시킨다는 계획



2 현지의 주요 지역 정보⁵²⁾



1) 일드 프랑스 지역

- 프랑스 중북부의 주들인 발두아즈·센에마른·센생드리·파리·오드센·발드마른·에 손·이블린으로 이루어진 지방으로 중심 도시는 파리임
- 일드프랑스는 프랑스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공업이 고도로 발달했 으며, 전자부품과 비행기 부품 등이 생산됨
- 공장· 연구 실험실· 연구소 등에서 전국의 공학자와 수학 및 컴퓨터 전문가들 이 많이 일하고 있음

^{52) 2013} KOTRA 자료 일부 참조

2) 론 알프(Rhone-Alpes) 지역

- 프랑스 남동부 주들인 루아르·론·앵·오트사부아·사부아·이제르·드롬·아르데슈를 포함하는 계획지역
- 주도는 리옹으로 남동쪽으로 오트알프 주, 남쪽으로 보클뤼즈·가르 주, 서쪽으로 로제르·오트루아르·퓌드돔·알리에 주, 북쪽으로는 손에루아르·쥐라 주와 접하고 있음
- 론알프는 인구가 밀집해 있고 이민 온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때문 에 전국 평균을 웃도는 비율로 증가했음
- 축산업이 지배적이며 사료와 곡물이 주요작물이고 포도재배는 주로 론 강 유역 에서만 이루어짐
- 공업이 상당히 발전했으며 금속가공 공장들이 리옹·그르노블·생테티엔 그리고 아르브 강을 따라 집중되어 있음
- 론알프는 합성섬유의 주요생산지고 생테티엔 분지에서는 석탄을 주요산업인 겨울철 스포츠가 오트사부아 주에 있는 샤모니몽블랑·므제브·모르진·아보리아·플렌, 사부아 주에 있는 발디제르·티뉴·쿠르슈벨, 이제르 주에 있는 알프뒤에·샹루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캐고 이제르 주의 라뮈르에서는 무연탄을 생산함

3 프랑스의 투자 형태 및 절차⁵³⁾

가. 투자 진출의 형태

1) 법인의 유형

O 유한책임회사(sociéetée àa responsabilitée limitéee: SARL)

^{53) 2013} KOTRA 자료 일부 참조

- 유한책임회사는 최소자본 요건은 없고 장기간 필요한 자금 조달에 충분한 자본과 액수는 부속정관에 규정하고 채권 발행시 납입금의 최소 1/5이 반드시 납입자본금이어야 하며 5년간 유지해야하는 제약이 따름
- 주식회사(sociééanonyme: SA)
 - 최소자본요건은 37,000 유로이며 자본금이 225,000 유로 이상일 경우 상장이 허용되고 유로자본금의 50%이상을 법인 설립시 납입해 5년간 유지해야함
 - 이사의 임명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1명이 대표 겸 이사회 의장을 맡거나 2명이 각각 대표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사회 의장이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음(회사내의 주요 역할이나 경영이 아닌 기타 업무에 한정)
 - 노동 제공 형식의 출자는 불허하고 주주의 책임은 납입금으로 한정하나 민사 및 형사 소송시는 예외이며 법정 감사인은 필수임
- 단순주식회사(sociéépar actions simplifié: SAS)
 - 단순주식회사는 최소자본 요건은 없고 장기간 필요한 자금 조달에 충분한 자본과 액수는 부속정관에 규정하고 상장은 불허하고 자본금의 50% 이상을 법인 설립시 납입해 5년간 유지해야 함
 - 이사의 임명 및 해임은 부속 정관에 규정하고 최소 1명의 의장과 멤버들로 구성된 이사회 정관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자가 대표가 될 수 있으며 이사의 지위는 회사의 임원 지위와 고용계약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점에서 SA와 동일
 - 노동 제공 형식의 출자는 불허하고 주주의 책임은 납입금으로 한정하나 민사 및 형사 소송시는 예외이며 다른 기업이 운영했거나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법정 감사인 필수임
- 합명회사(sociéén nom collectif), 민사회사(sociéécivile) 및 경제이익단체(GI: groupement d'intéê éonomique)이 있는데 이 형태는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파트너들간의 무한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으나 최저 자본 요 건이 없으며 구조상 유연성이 크고 회계 투명성도 높아 자회사로서는 매력적 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익명회사(sociéén participation)
 - 특수한 기업형태로 건설업, 공연예술 및 출판 부문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설립 이 간단한편임(법인사업자명부 등록 불필요)
- 유럽회사 (SE, société europénne)
 - 2개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에 소재한 기업은 유럽회사 지위를 선택할 수 있 고 동일한 규제사항과 통일된 경영 체계 및 재무 정보 공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2) 지점(支店)

- 자회사는 법인사업자명부(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é- RCS)에 등록시 독립 법인이 되고 설립자는 설립 초기의 법적 의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신설 법인이 책임을 맡기고 관련세금을 모두 납부 해야함
- 자회사와 모회사의 자산을 분리하므로 외국 기업은 프랑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의 손실은 모회사의 수익과 상계할 수 없음
- 자회사는 상업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 추진이나 기존 사업 확대 시 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판매 및 기술사용료, 수수료, 운영수 수료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프랑스의 사업등록 절차 요약

1) 사업체 형태

- 연락사무소
 - 외국 기업은 프랑스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본사 직원을 파견해 현지 연락처 나 대표사무소를 통해 자사를 대표하도록 할 수 있음

- 연락사무소는 사업성 조사, 광고선전활동, 홍보, 상품 보관 및 기타 예비적 또 는 부수적 성격의 업무수행 등과 같은 비 영리 활동을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음
- 연락사무소는 독립 법인이 아니며 청구서 발행과 일체의 계약 체결은 모회사 가 수행함
- 연락사무소는 세법 상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납부 대상 이 되지는 않지만 일부 지방 사업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은 납부해야하므로 현지진출 기업은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함
- 연락사무소는 영리활동이나 제조활동을 하거나, 직원이 본사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조 행위를 할 경우 또는 기업의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는 고정사업장 역할을 할 경우, 이 사무소는 고정사업장 또는 지사로 재분류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함
- 따라서 현지 진출 예정인 기업은 먼저 자사의 사업장이 프랑스에서 고정사업 장에 해당되는지 프랑스 과세당국에 문의해야함

○ 영업대표

- 영업 대표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는 직원으로 외국 기업의 직원(예:판매원) 이나 위탁판매 외무사원(VRP: Voyageur de commerce, Representant, Placier) 이 될 수 있음
- 위탁판매 외무사원은 복수의 기업에 고용된 중개인(VRP exclusif 또는 multicarte VRP)으로 해당 영업구역 내에서 고객을 방문하며, 잠재 고객과 접촉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임무는 영업 활동, 수주, 고용주 기업에 대한 주문 전달임
- 위탁판매 외무사원은 프랑스에서 특수한 법적 지위가 있으며 계약 종료시 특별보상을 받으며, '멀티카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무사원들이 포함된 이 대표들은 급여 소득 과세 대상이됨
- 위탁판매 외무사원이 회사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이들의 영업활동은 외무사원을 고용한 외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됨

○ 판매 대리인

- 외국 기업은 판매 대리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개인 자영업자나 대행 회사가 판매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판매대리인은 본사를 대신해 협상을 하거나 매매, 임대, 서비스 제공 계약서 의 체결을 담당함(즉, 대리인의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함)
- 이들은 복수의 기업을 위해 일할 수 있으며 대부분 한정된 지역 또는 영업부 문을 담당하며, 이들은 완료된 거래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에 해당하는 수수 료를 받음
- 판매 대리인은 외부 업체로 급여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종료시 특정 규칙이 적용되며, 업무상 과실이 아니면 판매 대리인은 지급받은 수수료 총 액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 지 사

- 지사장은 법적 대표로 본사에 보고를 하며 의사 결정권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음, 지사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회사의 영업활동을 모두 수행할 수 있지만 독립 법인은 아니므로 지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
- 지사가 재정난에 처하면 본사가 채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되며, 지사는 세법상 고정 사업장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함
- 지사를 독립 법인인 자회사로 전환할 수는 있지만 사업 매각 및 양도에 관한 법규정을 따라야 하며 과세 대상이됨에 유의해야함

○ 자회사

- 자회사와 모회사의 자산을 분리하므로 외국 기업은 프랑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자회사의 손실은 모회사의 수익과 상계할 수 없음
- 자회사는 상업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 추진이나 기존 사업 확대시 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판매 및 기술사용료, 수수료, 운영수수료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법인사업자명부(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ee -

RCS)에 등록시 독립법인이됨

- 설립자는 설립 초기의 법적 의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신설 법인이 책임을 맡으며, 자회사는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함

2) 원스톱 서비스 기관

- 프랑스는 신규로 회사를 설립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 기업수속센터(Centre de formalitédes entreprises: CFE)의 취급 절차
 -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당일 창구인 기업수속센터에 서 처리할 수 있고 이 센터는 회사 설립, 변경, 폐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관련 기관에 해당서류를 발송함
 - 상업등기소 : 사업설립 증명서(rééisséde créion d'entreprise ; 사업을 설립하는 회사가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허락하는 허가서)를 무료로 발행하고 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되면 사업자등록증 'K-bis'를 발행하는 기관임
 - 프랑스국립통계사무소(INSEE) :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APE 코드 및 고용인 용 SIREN, SIRET 번호(회사 등록번호)를 발급함
 - 세무서(Centre des impôs) 및 사회보장 부담금을 걷는 URSSAF (Unions de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rité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를 포함한 사회보장기관임
- 기업수속센터(CFE)의 미취급 절차
 - 법률가, 회계사, 건축가, 의사 등 전문가 협회 등록이 필요한 규제대상 직종 및 라이센스 관련 직종의 허가 신청서
 - 주소 증명서, 보험센터 가입
 - 프랑스특허청(INPI)에 상표 및 상호 등록 수속 양식
 - 프랑스 인터넷 명명협회(AFNIC)에 '.fr'로 끝나는 인터넷 도메인명 등록
 - 고용인 은퇴연금제도 가입(회사 등록 후 3개월 이내)

- 직원고용관련 수속은 URSSAF에서 단일 보고 양식(Déaration Unique d'Embauche)을 사용해 완료해야 함

3) 연락사무소 등록

- 제출서류
 - 대표 관련 서류(신원증명, 경찰 기록, 필요시 '상업' 체류증 또는 프레펙튀르 (Prefecture), 프랑스어로 번역된 정관 사본 2부, 사업장 임대 또는 구매 관련 서류
 - 원칙상 연락사무소는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자체 사업장이 있거나 프랑스에 서 직원을 몇 명 고용하는 휴면 기업의 경우 등록이 필요함

4) 지사 등록

- 지사는 반드시 등록해야하며, 등록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지사 등록시 제출 서류
 - 모회사의 정관 사본 2부(회사 대표의 인증을 받은 원본 및 프랑스어로 번역된 사본 각 2부)
 - 주소 증명서
 - 외국 회사 등기부 상의 회사 설립 증명서
 - 회사를 대신해 권한을 위임 받은 개인의 관련 서류(신분증, 신원보증서 등)

5) 신설회사 등록시 필요서류

- 이사진 및 법정감사(필요시)이름이 등재된 정관 원본 2부
- 현물 출자시 공식 감정인의 평가서 사본 2부
- 사업장의 임대 또는 소유 권리증 사본 1부
- 회사 설립 공고가 게재된 관보 1부
- 대표자의 출생증명서, 신분증(여권 등), 범죄기록 증명서

112 ■ 프랑스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특정 직업에 종사할 경우 요구되는 자격증 사본 1부
- 필요시 외국인 대표의('상업' 또는 '능력과 재능') 체류증 또는 프랑스에서 거주 하지 않는 유럽연합(EU)지역 외 국가 출신 대표자의 신분증
- 신설 기업의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의 증빙서류
- 신설회사를 대신해 완료된 각종 절차의 증명서 등



- 1. 프랑스 진출의 애로 및 주의 사항
- 2. 프랑스 진출 성공 사례

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

1

프랑스 진출의 애로 및 주의 사항54)

가. 프랑스 진출의 애로 사항

1) 인내심이 필요한 시장

- 한국인들이 프랑스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전반적으로 느리게 흘러 가는 사회 분위기로 행정관서는 물론이고 일반 바이어와 거래를 할 때 이들의 느린 일 처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인내심을 자극함
- 이는 프랑스인들의 낙천적인 국민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무엇이든지 한치의 실수 없이 꼼꼼하고 까다롭게 처리하려는 업무방식과 보수성 및 사회주의의 영 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프랑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프랑스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문서 계약 사회

- 프랑스는 성문화된 계약서 없이는 통하지 않는 나라 중의 하나로 거의 모든 일 이 문서나 서신을 통해 이루어짐
- 이는 차후 책임소재 여부를 사전에 확실히 정한 후 그 틀 안에서 투명하게 일을 추진하는 사회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인들은 계약 및 서류작성시 체면이나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부담감 등 동양적인 정서나 감정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음

^{54) 2013} KOTRA 자료 일부 참조

3)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나라

- 프랑스인들은 대체적으로 국제무역업체나 관광/여행업계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는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바이어들의 경우에 대개 영어를 구사하지만 그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음
- 대체적으로 불어를 잘하는 외국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정서가 있으므로 간단한 회화 정도라도 구사할 수 있다면 프랑스 진출에 큰 도움이 될수 있으므로 참고하여야 함

4) 체류증 발급이 까다로운 나라

-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주재원들 가운데는 몇 년째 3개월 유효 체류증을 갱신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음
- 프랑스는 체류증 신청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선착순 대열에 가담해 평균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하는 고충을 매 분기 또는 매 년 겪어야 하는 나라로 최근에 강화된 가족 동반 비자 발급 관련 법개정에 의하면, 앞으로는 불어 실력 테스트에 합격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프랑스 정부는 해외투자증대에 걸림돌이 되는 비자발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직업이민비자 단일창구신설 및 유럽 블루카드 도입 등이 있음

5) 변호사 및 회계사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

○ 프랑스는 회사설립 시 정관 작성에서부터 임대 계약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고용이 불가피한 변호사나 회계사의 수수료가 상당히 비싼 나라로 특히 변호사 비용은 평균적으로 시간당 300유로 수준인데, 한번 상담하여 서류 를 작성하는데 드는 변호사 비용은 최소 1,000유로 내외임

6) 문화적 차이

○ 프랑스는 우리 나라에 비해 사회주의가 발달해 있는 나라이어서 노동법이 근로 자 중심인 경우가 많아 기업주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고 정규직 채용 후에는 기 업의 경쟁력 제고를위한 경제적 해고를 행할 수 없음

- 기업이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본인의 중 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프랑스에서 정규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또한, 병가 및 출산휴가 등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규정이 까다로와 결 근율이 높은 편으로 3일 이상의 병가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는 사회보장기관에서 병가 기간 중의 급여(75%)를 지불해주기 위한 절차이어 서 반드시 확인한 후 사회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함

7) 인증 제도

- 프랑스는 수입품에 대해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인증 제도가 있고 노동자나 일반 소비자의 건강이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상품이나 장비에 대한 안적규격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또한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유럽 연합 지침의 안전 규정(EU Directives) CE 마크 획득이 의무인 품목이 있으며, 동 검사 및 시험은 프랑스뿐 아니라 국내 공인시험 기관에서 시행 할 수 있음(한국화확융합시험연구원 KTR, 한국표준인증원 KSC)
- EU지침의 안전규정에 따라 프랑스 내에서도 소비자용품 안전법(GSG) 충족 기준이 있어 동 안전 기준을 충족시킨 품목에 따라 프랑스의 인증 및 NF 마크를 받을 수 있는데 복잡한 기기 일수록 인증시간이 장기간 걸리고 비용이 증가하여 중소기업들의 관련 제품 수출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특히 전자기기, 안전관련 장치 수출업체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음)

나. 프랑스 진출시 주의 사항

- EU는 2013년 7월부터 신규 안전규격 'ISO 20345:2011' 인증 받은 제품 유통만 허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 2012년 2월 10일부터 한국산 강철 로프와 케이블에 반덤핑 관세 60.4%가 부과

됨에 주의

- 기존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던 중국산과 우크라이나산 강철 로프와 케이블 이 한국을 경유해 EU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EU지역으로 수출 건당 6,000 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한국 세관의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만 EU 회원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FTA 특혜세율 혜 택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함
 - 따라서 사전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 수출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함
 - 인증수출자 관련 신청은 한국 관세청을 통해 가능함
 - 또한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여 5년간 서류를 보존해야 함
- 2012년 11월부터 유통되는 모든 타이어에 대해 회전저항(RR), 젖은 노면 제동력(Wet Grip), 소음(Noise) 효율등급을 A에서 G까지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가시행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프랑스 진출 성공 사례55)

가. 태평양 화학(아모레 퍼시픽 그룹)

- 1990년 프랑스에 투자한 태평양 프랑스는 대표적인 프랑스 현지진출 성공사례 로 평가 받고 있음
- 이 회사는 총 242명 고용에 연간 5,800만 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대표적 인 향수 브랜드는 프랑스 내에서 5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등 대 성공을 기록 하고 있어 프랑스 진출을 계획하는 많은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을 통해 프랑스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 80개국

^{55) 2013} KOTRA 자료 일부 참조

이상으로 수출하면서 프랑스 투자 진출의 효과를 톡톡히 맛보고 있음

- 흔히 프랑스를 '화장품 산업의 리트머스 종이'라 하는데, 프랑스에서의 성공은 곧 전 세계에서 통한다는 비유가 그대로 실현된 셈으로 2006년 7월에는 성공적 인 프랑스 투자 진출을 통한 한-불 간 우애증진 공로로 서경배 사장이 프랑스 최고 권위의 훈장인 레종도뇌르(LEGION H'HONNEUR) 훈장을 수여 받은 바 있음
- 현지 공장은 샤르트르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위치에 밀밭과 언덕을 지나 위치 해 있음

나. 홍진크라운(중소기업 성공사례)

- 홍진크라운 유럽 지점은 2001년에 독일 접경 프랑스 동부 지방 도시에 투자한 이래 모토 사이클 헬멧, 재킷 및 장갑 시장에서 매년 300만 유로의 매출 신장 세를 올리고 있는 성공한 중소기업임
- 종업원 19명의 대부분이 물류 창고에서 근무하고 있고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판매를 전담하는 직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매니저가 불어 및 프랑스 현지에 능통한 한국인이라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는 현지 직원들과의 문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해낼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해주는 간부직원의 역할이 성공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이며, 물류센터 종업원들과의 인간관계 유지 능력이 탁월해 적기 공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거래처의 신뢰도 증가 및 매출 증대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임
- 판매직원에게 기본급 및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판매 신장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 또한 프랑스에서 가장 근면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독일 접경 도시에 투자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공 요인 중의 하나임
- 파리와 500km 거리에 있어 프랑스 수도권 시장 공략에 다소 제약을 받는 경향이 있으나 주요 도시별 및 지역별 중간 도매상들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 유지를

통해 이를 많이 극복하고 있는 점도 성공의 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다. 메디슨

- 메디슨은 2005 년에 의료기기(초음파 진단기) 판매업으로 프랑스에 진출하였으며,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미국, 프랑스로 양분된다고 할 정도로 프랑스의 의료기기 시장은 금액 면에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 특히 고급제품으로 구축되어 있음
- 프랑스의 의료서비스는 국가가 전담하고 있어 대부분의 병원들이 국영이고 의 사 등 병원 종사자들도 공무원의 신분임
- 또한,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어 의료기기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 으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 서비스가 세분화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품질이 더 욱 고급화 되는 특징을 가짐
- 이에 따라 메디슨은 테스트 마켓 수행, 의료기기 시장 정보 입수 및 수출 제품 고급화를 위해 프랑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였음
- 프랑스 의료기기시장은 GE(30%), 필립스(20%), 지멘스(10%), 도시바(10%) 등 이 시장의 70%를 이어 메디슨(7%), 알로카, 맨드레이 등이 나머지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
- 메디슨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틈새 시장인 민간 개인병원을 공략하고 의료기기의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 4개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여 프랑스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음
- 또한, 프랑스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구 식민지인 북부 아프리카 우회 진출 전략 으로 내년도에는 10%의 시장점유율 증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라. 현대자동차

○ 2011년까지 현지 수입업체(멀티 브랜드 수입업체)를 통하여 프랑스에 자동차를 판매해오던 현대자동차는 2012년 1월1일부 파리 북부 인근 도시에 직영판매법 인을 설립하였음

- 프랑스는 현대자동차로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유럽에서 가장 낮은 국가이어서 2011년 8월 시장점유율이 0.88%에 불과했음
- 현대자동차 프랑스는 2012년 유로컵 축구대회 기간 중 에펠탑 건너편 트로카데로 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 파리 시민들 및 광광객들에게 TV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행사를 비롯하여 교민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쇄신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했음
- 그 결과, 현대 자동차의 프랑스 판매는 지난 8월 누계 기준, 1만8천145대로 전 년동기 대비 37.7% 증가하여 시장점유율이 전년동기대비 0.52%포인트 증가한 1.4%를 기록했음
- 현대자동차 프랑스 법인은 올해를 유통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의 해로 삼아 2013년부터 본격 판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함

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1)

-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펀』,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전병목외 3인, 『외국법인의 자회사와 국내사업장 간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 제 연구』, 2008.9.
- 『주요국의 조세동향』, 한국조세연구원, 2012~2013
- The French Tax System, Pubic Finaces General Directorate
- Taxation and Investment in France 2012, Deloitte
- France Highlights 2013, Deloitte
- \$\tilde{\text{"2012 Global Transfer Pricing Reviews, KPMG}}\$
- Bulletin Officiel des Finances Publiques-Impôts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2012.9.12
- E&Y, 2012 Transfer pricing global reference guide
- "Doing Business in France 2010", Invest in France Agency
- 프랑스 국세청 : www.impots.gouv.fr
- 프랑스 법제처 : www.legifrance.gouv.fr
- 프랑스 투자진흥청: www.invest-in-france.org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kotra.or.kr의
- 한국조세연구원 : www.kipf.re.kr
- 프랑스정부부처 링크사이트(Le site officiel de l'administration française): www.service-public.fr
- 엘리제궁(대통령) : www.elysee.fr
- 총리실: www.gouverment.fr
- 외무부(Ministere des Affaires etrangeres): www.diplomatie.gouv.fr
- 산업부(Direction de l'Industrie): www.industrie.gouv.fr
- 대외무역부(Direction du Commerce exterieur): www.import-export.gouv.fr



- 경제통계연구소(INSEE): www.insee.fr
- 세관(Direction des Douanes): www.douane.gouv.fr
- 수출진흥청(UBI France): www.ubifrance.fr



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2)

- 투자진흥청(AFII): www.invest-in-france.org
-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www.banque-france.fr
- 관세청 무역통계열람사이트: lekiosque.finances.gouv.fr
- 중소기업부: www.pme.gouv.fr
-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신용보증기관: www.oseo.fr
- 경제재무산업부: www.economie.gouv.fr
- 기업설립지원청(APCE: Agence pour la creation d'entreprises): www.apce.fr
- 프랑스 관세청 무역 통계 유로 서비스 센터(CIS: Centre d'informations statistiques): www.cis@douane.finances.gouv.fr
- 프랑스 전경연(MEDEF: Le Mouvement des enterprises de France): www.medef.com
- 중소기업경영자 총연맹(Confederation generale du patronat des petites et moyennes enterprises) : www.cgpme.fr



프랑스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법률(프랑스어)





프랑스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법률(프랑스어)

법률 명칭 및 조항	페이지	비고
①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Article 57	130	• 조세일반법 제57조 (이전가격 실체법)
②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Article 238 A	132	■ 조세일반법 제238A조 (조세피난처 관련법)
③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icle L10	134	▪ 조세절차법 L10 (이전가격 등 세무조사 관련법)
④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icle L13 AA	136	• 조세절차법 L13 AA (이전가격 자료 제출 요구)
⑤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icle L13 B	140	▪ 조세절차법 L13B (이전가격 자료제출 기간)
⑥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icle L45	143	▪ 조세절차법 L45
⑦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icle L80 B	145	• 조세절차법 L80 B (APA 관련법)
8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icle L188 A	153	• 조세절차법 L188 A (소득조정 대상기간 등)
D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icle L189 A	155	▪ 조세절차법 L189 A (이전가격 과세 관련 세금징 수 기간 제한)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icle 57

Article 57

Modifié par LOI n°2009-1674 du 30 décembre 2009 - art. 22 (V)

Pour l'établissement de l'impôt sur le revenu dû par les entreprises qui sont sous la dépendance ou qui possèdent le contrôle d'entreprises situées hors de France, les bénéfices indirectement transférés à ces dernières, soit par voie de majoration ou de diminution des prix d'achat ou de vente, soit par tout autre moyen, sont incorporés aux résultats accusés par les comptabilités. Il est procédé de même à l'égard des entreprises qui sont sous la dépendance d'une entreprise ou d'un groupe possédant également le contrôle d'entreprises situées hors de France

La condition de dépendance ou de contrôle n'est pas exigée lorsque le transfert s'effectue avec des entreprises établies dans un Etat étranger ou dans un territoire situé hors de France dont le régime fiscal est privilégié au se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238 A.

En cas de défaut de réponse à la demande faite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13 B du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ou en cas d'absence de production ou de production partielle de la documentation mentionnée au III de l'article L. 13 AA et à l'article L. 13 AB du même livre, les bases d'imposition concernées par la demande sont évaluées par l'administration à partir des éléments dont elle dispose et en suivant la procédure contradictoire définie aux articles L. 57 à L. 61 du même livre.



A défaut d'éléments précis pour opérer les rectifications prévues aux premier,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les produits imposables sont déterminés par comparaison avec ceux des entreprises similaires exploitées normalement.

NOTA:

LOI n° 2009-1674 du 30 décembre 2009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09 art 22 VII 1 : les présentes dispositions sont applicables aux exercices ouverts à compter du 1er janvier 2010.

Liens relatifs à cet articleCite: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238 A (VT)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13 AA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13 AB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13 B (V)

Cité par:

LOI n°2010-1657 du 29 décembre 2010 - art. 136 (V)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209 B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13 B (V)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icle 238 A

Article 238 A

Modifié par LOI n°2009-1674

Les intérêts, arrérages et autres produits des obligations, créances, dépôts et cautionnements, les redevances de cession ou concession de licences d'exploitation, de brevets d'invention, de marques de fabrique, procédés ou formules de fabrication et autres droits analogues ou les rémunérations de services, payés ou dus par une personne physique ou morale domiciliée ou établie en France à d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qui sont domiciliées ou établies dans un Etat étranger ou un territoire situé hors de France et y sont soumises à un régime fiscal privilégié, ne sont admis comme charges déductibles pour l'établissement de l'impôt que si le débiteur apporte la preuve que les dépenses correspondent à des opérations réelles et qu'elles ne présentent pas un caractère anormal ou exagéré.

Pour l'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les personnes sont regardées comme soumises à un régime fiscal privilégié dans l'Etat ou le territoire considéré si elles n'y sont pas imposables ou si elles y sont assujetties à des impôts sur les bénéfices ou les revenus dont le montant est inférieur de plus de la moitié à celui de l'impôt sur les bénéfices ou sur les revenus dont elles auraient été redevables dans les conditions de droit commun en France, si elles y avaient été domiciliées ou établies.

Toutefois, les intérêts, arrérages et autres produits des obligations, créances, dépôts et cautionnements, à l'exception de ceux dus au titre d'emprunts conclus avant le 1er mars 2010 ou conclus à compter de cette date mais assimilables à ces derniers, ainsi que les redevances de cession ou concession de licences d'exploitation, de brevets d'invention, de marques de fabrique, procédés ou



formules de fabrication et autres droits analogues ou les rémunérations de services, payés ou dus par une personne physique ou morale domiciliée ou établie en France à d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qui sont domiciliées ou établies dans un Etat ou territoire non coopératif au sens de l'article 238-0 A, ne sont pas admis comme charges déductibles pour l'établissement de l'impôt, sauf si le débiteur apporte la preuve mentionnée au premier alinéa et démontre que les opérations auxquelles correspondent les dépenses ont principalement un objet et un effet autres que de permettre la localisation de ces dépenses dans un Etat ou territoire non coopératif.

Les premier et troisième alinéas s'appliquent également à tout versement effectué sur un compte tenu dans un organisme financier établi dans un des Etats ou territoires visés, respectivement, aux premier et troisième alinéas.

NOTA:

LOI n° 2009-1674 du 30 décembre 2009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09 art 22 VII 2 : les présentes dispositions sont applicables aux exercices ouverts à compter du 1er janvier 2011.

Liens relatifs à cet articleCité par:

Arrêté du 13 décembre 2007 - art. 2, v. init.

LOI n°2010-1657 du 29 décembre 2010 - art. 136 (V)

LOI n°2010-1658 du 29 décembre 2010 - art. 69, v. init.

LOI n°2010-1658 du 29 décembre 2010 - art. 69 (V)

LOI n°2012-1270 du 20 novembre 2012 - art. 24 (V)

LOI n°2012-1270 du 20 novembre 2012 - art. 24, v. init.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209 B (V)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57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icle L10

Article L10

Modifié par LOI n°2008-1425 du 27 décembre 2008 - art. 38 (V)

L'administration des impôts contrôle les déclarations ainsi que les actes utilisés pour l'établissement des impôts, droits, taxes et redevances.

Elle contrôle, également les documents déposés en vue d'obtenir des déductions, restitutions ou remboursements, ou d'acquitter tout ou partie d'une imposition au moyen d'une créance sur l'Etat.

A cette fin, elle peut demander aux contribuables tous renseignements, justifications ou éclaircissements relatifs aux déclarations souscrites ou aux actes déposés.

Avant l'engagement d'une des vérifications prévues aux articles L. 12 et L. 13, l'administration des impôts remet au contribuable la charte des droits et obligations du contribuable vérifié ; les dispositions contenues dans la charte sont opposables à l'administration.

Liens relatifs à cet articleCite: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12 (V)

Cité par:

Décret n°2000-738 du 1 août 2000 - art. 2-1 (V)

Décret n°2006-1723 du 23 décembre 2006 - art. 1 (Ab)

134 Ⅲ 프랑스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Décret n°2009-707 du 16 juin 2009 - art. 4 (V)

Décret n°2010-939 du 24 août 2010 - art. 1, v. init.

Décret n°2010-939 du 24 août 2010 - art. 2, v. init.

Arrêté du 25 novembre 2010 - art. (V)

Arrêté du 25 novembre 2010 - art., v. init.

Décret n°2011-645 du 9 juin 2011 - art., v. init.

CODE GENERAL DES IMPOTS, CGI. - art. 204 (M)

CODE GENERAL DES IMPOTS, CGI. - art. 204 (M)

CODE GENERAL DES IMPOTS, CGI. - art. 204 (V)

CODE GENERAL DES IMPOTS, CGI. - art. 229 B (V)

CODE GENERAL DES IMPOTS, CGI. - art. 55 (V)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289 bis (Ab)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80 F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80 F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135 S-2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135 S-2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icle L13 AA

Article L13 AA

Créé par LOI n°2009-1674 du 30 décembre 2009 - art. 22 (V)

- I. Les personnes morales établies en France(프랑스에서 설립된 법인):
- a) Dont le chiffre d'affaires annuel hors taxes ou l'actif brut figurant au bilan est supérieur ou égal à 400 millions d'euros, ou
- b) Détenant à la clôture de l'exercice,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lus de la moitié du capital ou des droits de vote d'une entité juridique personne morale, organisme, fiducie ou institution comparable établie ou constituée en France ou hors de France satisfaisant à l'une des conditions mentionnées au a, ou
- c) Dont plus de la moitié du capital ou des droits de vote est détenue, à la clôture de l'exercice,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ar une entité juridique satisfaisant à l'une des conditions mentionnées au a, ou
- d) Bénéficiant de l'agrément prévu à l'article 209 quinquies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et, dans ce cas, toutes les entreprises imposables en France faisant partie du périmètre de consolidation, ou
- e) Appartenant à un groupe relevant du régime fiscal prévu à l'article 223 A du même code lorsque ce groupe comprend au moins une personne morale satisfaisant l'une des conditions mentionnées aux a, b, c ou d,



doivent tenir à disposition de l'administration une documentation permettant de justifier la politique de prix de transfert pratiquée dans le cadre de transactions de toute nature réalisées avec des entités juridiques liées au sens du 12 de l'article 39 du même code établies ou constituées hors de France, ci-après désignées par les termes : " entreprises associées ".

- II. La documentation mentionnée au I comprend les éléments suivants :
- 1° Des informations générales sur le groupe d'entreprises associées :
- une description générale de l'activité déployée, incluant les changements intervenus au cours de l'exercice vérifié ;
- une description générale des structures juridiques et opérationnelles du groupe d'entreprises associées, comportant une identification des entreprises associées du groupe engagées dans des transactions contrôlées ;
- une description générale des fonctions exercées et des risques assumés par les entreprises associées dès lors qu'ils affectent l'entreprise vérifiée ;
- une liste des principaux actifs incorporels détenus, notamment brevets, marques, noms commerciaux et savoir-faire, en relation avec l'entreprise vérifiée :
- une description générale de la politique de prix de transfert du groupe ;
- 2° Des informations spécifiques concernant l'entreprise vérifiée :
- une description de l'activité déployée, incluant les changements intervenus au cours de l'exercice vérifié ;
- une description des opérations réalisées avec d'autres entreprises associées,

incluant la nature et le montant des flux, y compris les redevances ;

- une liste des accords de répartition de coûts ainsi qu'une copie des accords préalables en matière de prix de transfert et des rescrits relatifs à la détermination des prix de transfert, affectant les résultats de l'entreprise vérifiée ;
- une présentation de la ou des méthodes de détermination des prix de transfert dans le respect du principe de pleine concurrence, comportant une analyse des fonctions exercées, des actifs utilisés et des risques assumés ainsi qu'une explication concernant la sélection et l'application de la ou des méthodes retenues ;
- lorsque la méthode choisie le requiert, une analyse des éléments de comparaison considérés comme pertinents par l'entreprise.
- III. Cette documentation, qui ne se substitue pas aux justificatifs afférents à chaque transaction, est tenue à la disposition de l'administration à la date d'engagement de la vérification de comptabilité.

Si la documentation requise n'est pas mise à sa disposition à cette date, ou ne l'est que partiellement, l'administration adresse à la personne morale mentionnée au I une mise en demeure de la produire ou de la compléter dans un délai de trente jours, en précisant la nature des documents ou compléments attendus. Cette mise en demeure doit indiquer les sanctions applicables en l'absence de réponse ou en cas de réponse partielle.



NOTA:

LOI n° 2009-1674 du 30 décembre 2009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09 art 22 VII 1 : les présentes dispositions sont applicables aux exercices ouverts à compter du 1er janvier 2010.

Liens relatifs à cet articleCite: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209 quinquies

Cité par: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57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13 AB (V)

Crée par: LOI n°2009-1674 du 30 décembre 2009 - art. 22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icle L13 B

Article L13 B

Modifié par LOI n°2009-1674 du 30 décembre 2009 - art. 22 (V)

Lorsque, au cours d'une vérification de comptabilité, l'administration a réuni des éléments faisant présumer qu'une entreprise, autre que celles mentionnées au I de l'article L. 13 AA, a opéré un transfert indirect de bénéfices, au sens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57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elle peut demander à cette entreprise des informations et documents précisant :

- 1° La nature des relations entrant dans les prévisions de l'article 57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entre cette entreprise et une ou plusieurs entreprises exploitées hors de France ou sociétés ou groupements établis hors de France ;
- 2° La méthode de détermination des prix des opérations de nature industrielle, commerciale ou financière qu'elle effectue avec des entreprises, sociétés ou groupements visés au 1° et les éléments qui la justifient ainsi que, le cas échéant, les contreparties consenties ;
- 3° **Les activités** exercées par les entreprises, sociétés ou groupements visés au 1°, liées aux opérations visées au 2°;
- 4° **Le traitement fiscal réservé** aux opérations visées au 2° et réalisées par les entreprises qu'elle exploite hors de France ou par les sociétés ou groupements visés au 1° dont elle déti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la majorité du capital ou des droits de vote.



Les demandes visées au premier alinéa doivent être précises et indiquer explicitement, par nature d'activité ou par produit, le pays ou le territoire concerné, l'entreprise, la société ou le groupement visé ainsi que, le cas échéant, les montants en cause. Elles doivent, en outre, préciser à l'entreprise vérifiée le délai de réponse qui lui est ouvert. Ce délai, qui ne peut être inférieur à deux mois, peut être prorogé sur demande motivée sans pouvoir excéder au total une durée de trois mois.

Lorsque l'entreprise a répondu de façon insuffisante, l'administration lui adresse une mise en demeure d'avoir à compléter sa réponse dans un délai de **trente jours** en précisant les compléments de réponse qu'elle souhaite. Cette mise en demeure doit rappeler les sanctions applicables en cas de défaut de réponse (1).

(1) Ces dispositions s'appliquent aux contrôles engagés à compter de la date d'entrée en vigueur de la loi 96-314.

NOTA:

LOI n° 2009-1674 du 30 décembre 2009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09 art 22 VII 1 : les présentes dispositions sont applicables aux exercices ouverts à compter du 1er janvier 2010.

Liens relatifs à cet articleCite: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57

Cité par:

LOI n°2010-1657 du 29 décembre 2010 - art. 136 (V)

CODE GENERAL DES IMPOTS, CGI. - art. 1740 nonies (Ab)

CODE GENERAL DES IMPOTS, CGI. - art. 1740 nonies (M)

CODE GENERAL DES IMPOTS, CGI. - art. 57 (M)

CODE GENERAL DES IMPOTS, CGI. - art. 57 (V)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57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80 B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80 B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80 B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80 B (VD)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80 B (VD)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icle L45

Article L45

Modifié par LOI n°2011-1978 du 28 décembre 2011 - art. 59 (V)

- 1. Les agents de l'administration des impôts peuvent assurer le contrôle et l'assiette de l'ensemble des impôts ou taxes dus par le contribuable qu'ils vérifient.
- 2. En matière d'impôts directs et de taxes assises sur les primes d'assurance, lorsque la situation d'un ou plusieurs contribuables présente un intérêt commun ou complémentaire pour plusieurs Etats membres de la Communauté européenne, l'administration peut convenir avec les administrations des autres Etats membres de procéder à des contrôles simultanés, chacune sur le territoire de l'Etat dont elle relève, en vue d'échanger les renseignements ainsi obtenus.
- 3. Les fonctionnaires des administrations des autr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dûment habilités par l'autorité requérante par un mandat écrit et autorisés par l'administration française peuvent, selon des modalité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
- a) Etre présents dans les bureaux où les agents exécutent leurs tâches ;
- b) Assister aux procédures administratives conduites sur le territoire français;
- c) Interroger les contribuables et leur demander des renseignements ;
- d) Examiner des dossiers et recevoir des copies des informations recherchées.

Tout refus opposé par le contribuable à la présence de fonctionnaires des

administrations des autres Etats membres dans le cadre des enquêtes prévues au 1 est considéré comme un refus opposé aux agents de l'administration et entraîne l'application, le cas échéant, des articles 1732 et 1734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Liens relatifs à cet articleCite: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1732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icle L80 B

Article L80 B

Modifié par LOI n°2012-1509 du 29 décembre 2012 - art. 71 (VD) La garantie prévue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L. 80 A est applicable :

1° Lorsque l'administration a formellement pris position sur l'appréciation d'une situation de fait au regard d'un texte fiscal ; elle se prononce dans un délai de trois mois lorsqu'elle est saisie d'une demande écrite, précise et complète par un redevable de bonne foi.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écis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1°, notamment le contenu, le lieu ainsi que les modalités de dépôt de cette demande ;

2° Lorsque l'administration n'a pas répondu dans un délai de trois mois à un redevable de bonne foi qui :

a. Disposition devenue sans objet;

b. a notifié à l'administration sa volonté de bénéficier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39 AB, 39 AC, 39 quinquies A, 39 quinquies D, 39 quinquies DA ou des articles 39 quinquies E, 39 quinquies F, 39 quinquies FA, 39 quinquies FC, 44 sexies, 44 octies A ou 44 quindecies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La notification doit être préalable à l'opération en cause et effectuée à partir d'une présentation écrite précise et complète de la situation de fait.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écis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2°, notamment le contenu, le lieu de dépôt ainsi que les modalités selon lesquelles l'administration accuse réception de ces notifications ;

3° Lorsque l'administration n'a pas répondu de manière motivée dans un délai de trois mois à un redevable de bonne foi qui a demandé, au moins six mois avant la date limite de dépôt de la déclaration spéciale, à partir d'une présentation écrite, précise et complète de la situation de fait, si son projet de recherche est éligible au bénéfic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244 quater B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au titre des dépenses mentionnées aux a à j et, à compter du 1er janvier 2014, aux a à k du II du même article. Lorsque le projet de recherche est pluriannuel, cette demande doit être effectuée au moins six mois avant la date limite de dépôt de la première déclaration spéciale relative à ce projet.

Pour l'examen des demandes mentionnées au premier alinéa, l'administration des impôts sollicite l'avis des services relevant du ministre chargé de la recherche ou d'organismes chargés de soutenir l'innovation dont la liste est fixée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lorsque l'appréciation du caractère scientifique et technique du projet de recherche présenté par l'entreprise le nécessite.

L'avis est notifié au contribuable et à l'administration des impôts. Lorsqu'il est favorable, celle-ci ne peut rejeter la demande du contribuable que pour un motif tiré de ce qu'une autre des condi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244 quater B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n'est pas remplie.

Les personnes consultées en application du deuxième alinéa sont tenues au secret professionnel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L. 103.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écis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3°;

3° bis Lorsque les services relevant du ministre chargé de la recherche ou un organisme chargé de soutenir l'innovation figurant sur la liste mentionnée au 3° n'ont pas répondu dans un délai de trois mois à un redevable de bonne foi qui leur a demandé, au moins six mois avant la date limite de dépôt de la déclaration spéciale, à partir d'une présentation écrite, précise et complète de la situation de fait, si son projet de recherche présente un caractère scientifique et technique le rendant éligible au bénéfic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244 quater B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au titre des dépenses mentionnées aux a à j et, à compter du 1er janvier 2014, aux a à k du II du même article. Lorsque le projet de recherche est pluriannuel, cette demande doit être effectuée au moins six mois avant la date limite de dépôt de la première déclaration spéciale relative à ce projet.

La prise de position des services relevant du ministre chargé de la recherche ou de l'organisme chargé de soutenir l'innovation est notifiée au contribuable et à l'administration des impôts. Cette réponse doit être motivée.

Les personnes consultées en 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sont tenues au secret professionnel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L. 103.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écis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3° bis ;

4° Lorsque l'administration n'a pas répondu de manière motivée dans un délai de trois mois à un contribuable de bonne foi qui a demandé, à partir d'une

présentation écrite précise et complète de la situation de fait, si son entreprise constitue une jeune entreprise innovante au sens de l'article 44 sexies-0 A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écis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4° concernant les documents et informations qui doivent être fournis ;

5° Lorsque l'administration n'a pas répondu de manière motivée dans un délai de trois mois à un contribuable de bonne foi qui a demandé, à partir d'une présentation écrite précise et complète de la situation de fait, si son entreprise pouvait bénéficier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44 undecies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écis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5° concernant les documents et informations qui doivent être fournis ;

6° Lorsque l'administration n'a pas répondu dans un délai de trois mois à un contribuable de bonne foi qui a demandé, à partir d'une présentation écrite précise et complète de la situation de fait, l'assurance qu'il ne dispose pas en France d'un établissement stable ou d'une base fixe au sens de la convention fiscale liant la France à l'État dans lequel ce contribuable est résident.

Un décret en Conseil d'État précis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6°;

7° Lorsque l'administration a conclu un accord préalable portant sur la méthode de détermination des prix mentionnés au 2° de l'article L. 13 B, soit avec l'autorité compétente désignée par une convention fiscale bilatérale destinée à éliminer les doubles impositions, soit avec le contribuable ;

8° Lorsque l'administration n'a pas répondu dans un délai de trois mois à un



contribuable de bonne foi qui a demandé, à partir d'une présentation écrite, précise et complète de la situation de fait, si les revenus de son activité professionnelle, lorsqu'elle est soumise à l'impôt sur le revenu, relèvent de la catégorie des béné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au sens de l'article 34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ou des bénéfices des professions libérales et des charges et offices dont les titulaires n'ont pas la qualité de commerçants mentionnés à l'article 92 du même code, ou, s'agissant d'une société civile, si les résultats de son activité professionnelle sont soumis à l'impôt sur le revenu ou à l'impôt sur les sociétés.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écis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8°.

NOTA: LOI n° 2012-1509 du 29 décembre 2012 de finances pour 2013 art. 71 III : les présentes dispositions s'appliquent aux demandes adressées à compter du 1er janvier 2013.

Liens relatifs à cet articleCite: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244 quater B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34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39 AB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39 AC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39 quinquies A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39 quinquies D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39 quinquies DA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39 quinquies E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39 quinquies F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39 quinquies FC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39 quinquies FA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44 octies A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44 quindecies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44 sexies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44 sexies-0 A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44 undecies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 art. 92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103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13 B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80 A

Cité par:

Arrêté du 25 juillet 1996 - art. 1 (V)

Arrêté du 25 juillet 1996 - art. 2 (V)

Arrêté du 25 juillet 1996 - art. 3 (V)

Arrêté du 25 juillet 1996 - art. ANNEXE I (V)

Arrêté du 25 juillet 1996 - art. ANNEXE II (V)

Arrêté du 25 juillet 1996 - art. ANNEXE III (V)

Arrêté du 16 mai 1997 - art. 1 (Ab)

Loi - art. 131 (M)

Loi - art. 131 (M)

Loi - art. 131 (V)

Loi de finances pour 2004 (n° 2003-1311 du 30 d... - art. 131 (V)

Loi n° 2003-1311 du 30 décembre 2003 - art. 131 (V)

Loi n°2003-1311 du 30 décembre 2003 - art. 131 (V)



Loi n°2003-1311 du 30 décembre 2003 - art. 131 (V)

Décret n°2004-581 du 21 juin 2004 - art. 3 (V)

Loi n°2004-1484 du 30 décembre 2004 - art. 24 (V)

Arrêté du 11 juin 2008 - art. (V)

Arrêté du 11 juin 2008 - art. 1 (V)

Arrêté du 11 juin 2008 - art. 1, v. init.

Arrêté du 11 juin 2008 - art., v. init.

Décret n°2009-817 du 1er juillet 2009, v. init.

Arrêté du 27 août 2009, v. init.

Décret n°2009-1575 du 16 décembre 2009, v. init.

Décret n°2009-1701 du 30 décembre 2009, v. init.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80 C (M)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80 C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11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1 (M)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1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10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10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12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12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13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14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15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4 (M)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4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5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5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5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5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6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6-1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6-1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6-2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6-3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7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8 (M)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8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8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9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B-9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R • 80 CB-5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icle L188 A

Article L188 A

Modifié par Loi 2004-1484 2004-12-30 art. 104 III, IV Finances pour 2005 JORF 31 décembre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6

Modifié par Loi n°2004-1484 du 30 décembre 2004 - art. 104 (V) JORF 31 décembre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6

Lorsque l'administration a, dans le délai initial de reprise, demandé à l'autorité compétente d'un autre Etat ou territoire des renseignements concernant soit les relations d'un contribuable qui entrent dans les prévisions des articles 57 ou 209 B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avec une entreprise ou une entité juridique exploitant une activité ou établi dans cet Etat ou ce territoire, soit les biens, les avoirs ou les revenus dont un contribuable a pu disposer hors de France ou les activités qu'il a pu y exercer, soit ces deux catégories de renseignements, les omissions ou insuffisances d'imposition y afférentes peuvent être réparées, même si le délai initial de reprise est écoulé, jusqu'à la fin de l'année qui suit celle de la réponse à la demande et au plus tard jusqu'à la fin de la cinquième année qui suit celle au titre de laquelle l'imposition est due.

Le présent article s'appliqu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L. 186 et dans la mesure où le contribuable a été informé de l'existence de la demande de renseignements, au moment où celle-ci a été formulée, ainsi que de l'intervention de la réponse de l'autorité compétente de l'autre Etat ou territoire au moment où cette réponse est parvenue à l'administration (1).

NOTA:

(1) Ces dispositions s'appliquent aux contrôles engagés à compter de la date d'entrée en vigueur de la loi 96-314.

Liens relatifs à cet articleCite:

CGI 57, 209 B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186 (M)

Cité par:

CODE GENERAL DES IMPOTS, CGI. - art. 1727 (V)

CODE GENERAL DES IMPOTS, CGI. - art. 1727 (V)

CODE GENERAL DES IMPOTS, CGI. - art. 1727 A (Ab)

CODE GENERAL DES IMPOTS, CGI. - art. 1727 A (M)

CODE GENERAL DES IMPOTS, CGI. - art. 1727 A (M)

CODE GENERAL DES IMPOTS, CGI. - art. 1727 A (M)

CODE GENERAL DES IMPOTS, CGI. - art. 1727 A (M)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50 (M)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50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50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50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51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51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 L51 (V)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Article L189 A

Article L189 A

Modifié par LOI n°2010-1658 du 29 décembre 2010 - art. 69 (V)

Lorsqu'à la suite d'une proposition de rectification, une procédure amiable en vue d'éliminer la double imposition est ouverte entre la France et un autre Etat ou territoire sur le fondement d'une convention fiscale bilatérale ou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90/436/CE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oubles impositions en cas de correction des bénéfices d'entreprises associées du 23 juillet 1990, le cours du délai d'établissement de l'imposition correspondante est suspendu de la date d'ouverture de la procédure amiable au terme du troisième mois qui suit la date de la notification au contribuable de l'accord ou du constat de désaccord intervenu entre les autorités compétentes, sauf si les bénéfices ou revenus rectifiés ont bénéficié d'un régime fiscal privilégié dans l'autre Etat ou territoire au sens de l'article 238 A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NOTA:

Loi n° 2010-1658 du 29 décembbre 2010 article 69 II : Le I s'applique aux procédures amiables ouvertes à compter du 1er janvier 2011.

Liens relatifs à cet article



본 책자는 우리 기업들이 프랑스에 진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프랑스의 조세법 및 관련 법령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프랑스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07 팩스번호 : 02-723-9976

원고 작성 및 편집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국세조사관 최찬민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국세조사관 이세연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국세조사관 문혜경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397-1407)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